



특별한
국방

제74주년 국군의 날
THE 74th ROK ARMED FORCES DAY

특별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THE 74th ROK ARMED FORCES DAY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2022년 10월)

부록

특별부록

1. 한미동맹의 과거·현재·미래
2.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의 역사와 미래
3.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4. 방산수출 성과 및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일반부록

1. 주변국 군사력 현황
2.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3.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4. 남북 군사력 현황
5. 남북 경제지표 현황
6.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7. 북핵 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8.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평가
9.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10. 남북 군사관계 일지
11.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12.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13.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유형
14.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5.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16.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17.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18.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
19.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21. 병사 봉급 변화 추이
22.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23. 국방기구도
24.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25.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1871~1950.1. 한미관계의 태동

1871년 미국의 통상 요구로 한미관계가 시작되지만, 실질적인 협력관계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기는 미국이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여 동맹관계로 발전되지 못했으나 한미 군사관계의 맹아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871.6.1.	1882.5.22.	1945.8.15.	1945.9.8.	1948.8.15.	1949.6.29.	1950.1.12.
신미양요	「조미수호통상조약」	2차 세계대전 종전	美24군단 인천 진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주한미군 철수	에치슨라인 발표



신미양요(1871.6.1.~6.11.) 당시 미 극동함대 콜로라도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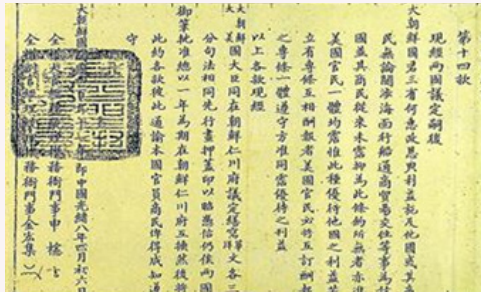
한미관계의 시작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1866년)으로 비롯된 신미양요다. 당시 미국은 콜로라도호를 비롯하여 호위함 3척, 포함 2척, 병력 1,230명을 조선에 파견하여 통상을 요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진주와 철수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라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미 제24군단이 한반도에 진주하면서 한-미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미 육군성의 한국 점령계획에 따라 1945년 9월부터 11월까지 남한지역에 7만여 명의 미군을 전개시켜 군정을 실시하였다.

한편 미국은 종전 후 급속한 병력감축을 단행하면서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해외주둔 병력의 조정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1947년 4월 29일 미 합참 합동전략조사위원회(JSSC: Joint Strategy Survey Committee)의 보고서 「국가안보의 견지에서 본 타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에서 한국 원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으나,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이 같은 전략 평가에 기초하여 미군부는 아시아에서의 미군 주둔이 불필요하다는 「도서변방전략(Island Perimeter Strategy)」을 채택하였으며, 이 전략은 이후 1950년 「에치슨 선언」으로 공표되었다.

미국은 1948년 4월 8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대신 한국에 대해 군사 및 경제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안보회의 문서 8호(NSC8)를 채택하였다. 1949년 3월 22일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 시한을 1949년 6월 말로 조정하고 한국에 보다 많은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제공할 것을 규정한 새로운 수정 문서(NSC 8/2)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 3만 명에 달하던 주한미군은 1948년 9월 15일 철수를 개시, 이듬해 6월 29일까지 군사고문단(KMAG: Korea Military Advisory Group) 479명(인가 병력)만 남기고 철수를 완료하였다.



「조미수호통상조약」(1882.5.22.)

조선이 서구 열강과 최초로 맺은 근대식 조약이다. 본 조약에 따라 조선과 미국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그 결과 당시 소련의 지원하에 꾸준히 군사력을 확충해온 북한에 비해 남한은 적정한 수준의 억제력을 보유하지 못한 채 군사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철수하는 미군들(1949.6.29.)

미국의 전략적 결정에 따라 남한에 주둔 중이던 미군이 철수를 완료함으로써 남한에는 479명의 군사고문단만이 잔류하게 된다.



에치슨라인(1950.1.12.)

딘 애치슨(Dean Acheson) 미 국무장관은 「아시아에서의 위기」에 대해 연설하면서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을 알류산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면서 「이 방위선 밖에 위치한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아무런 보장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50~1953 미국의 6·25 전쟁 참전과 한미동맹 성립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기습남침을 개시하자 미국은 즉각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청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 등 16개 참전국 포함 총 63개 지원국의 도움에 힘입어 공산군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 후 1953년 10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여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시작되었고, 이는 향후 연합방위체제의 법적 근간이 되었다.

1950.6.25.	1950.6.30.	1950.7.1.~7.4	1950.7.14.	1951.7.10.	1953.7.27.	1953.10.1.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 발발	트루먼 대통령 지상군 투입 승인	미 24사단 전개	국군 작전지휘권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	휴전회담 시작	「정전협정」 발효	「한미 상호방위조약」 조인 * 한미동맹 공식 출범

6·25 전쟁 일지

일 자	주요 내용
1950.6.25.	북한군 남침 - 미국, 즉각 유엔안보리 소집 요청 - 한국 정부, 미국에 군사원조 요청
6.27.	유엔안보리, 대북한 군사 제재 및 한국 군사 지원 결의
6.30.	트루먼 미 대통령, 미 지상군 한국 출동 명령
7.3.	맥아더 연합군 총사령관, 미 해병대 한국 출동 명령
7.7.	유엔안보리, 유엔 통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결의 채택
7.8.	트루먼 대통령, 유엔군 총사령관에 맥아더 원상 임명
7.14.	이승만 대통령,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이양
8.1.~9.14.	낙동강 방어선 전투
9.15.	유엔군, 인천 상륙작전
9.28.	유엔군, 서울 수복
10.19.	유엔군, 평양 점령
10.26.	유엔군, 압록강 도달
1951.1.15.	중공군, 서울 점령
3.15.	유엔군, 서울 재수복
4.11.	유엔군 총사령관에 리지웨이 중장 임명
1952.5.11.	유엔군 총사령관에 클리크 장군 임명
12.2.	아이젠하워 미 대통령 당선자 방한, 전투지역 시찰
1953.7.12.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에 합의
7.27.	「정전협정」, 체결



「한미 상호방위조약」 가조인 (1953.8.8.)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델레스 미 국무부장관이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하고 있다. 정식 조인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되었으며, 동 조약으로 미국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을 공동으로 방위하게 되었다.



낙동강 방어선(1950.8.1.~9.14.)



유엔군 진격 상황도(1950.10.)



인천 상륙작전(1950.9.15.)

6·25전쟁 당시 미군의 희생

- 전사자 36,940명
- 부상자 92,134명
- 실 종 3,737명
- 포 로 4,439명

「한미 상호방위조약」(1953.10.1.)

6·25 전쟁 중 한반도의 통일 없는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은 조기 종전을 원했던 미국 정부와 외교적 협상을 통해 「정전협정」 체결에 동의하는 대가로 휴전 이후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미동맹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 주요 내용 >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일방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정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침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하여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실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있는 영토 또한 금후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관리하에 합병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동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1954 ~ 1968 미국의 군사 원조와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공식적인 한미 군사동맹관계가 맺어진 이후 1960년대 말까지 한미관계는 자원-피지원 관계였다.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주한미군에 제공하고 미국은 한국에 군사 및 경제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주한미군이 한국 방위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계기로 한미 군사관계는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였다.

1954.11.17.	1961.11.14.	1964.5.8.	1964.9.22.	1967.2.9.	1968.4.17~28.	1968.5.27~28.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 채택	박정희 의장-케네디 대통령 정상회담	미국, 한국에 베트남전 지원 요청	한국군 베트남전 파병 개시	「주한미군지위협정」 발효	박정희 대통령-존슨 대통령 정상회담	1차 한미 국방 각료 회담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 조인 (1954.11.17.)

변영태 외무부장관과 브릭스 주한 미 대사 간에 체결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 원조에 관한 한-미 간의 합의 의사록」은 미국이 한국에 1955년도 회계연도에 4억 2천만 달러의 군사 원조와 2억 8천만 달러의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10개 예비 사단의 추가 신설과 79척의 군함 및 약 100대의 제트 전투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사령부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 국군을 국제연합사령부의 작전 통제권하에 둔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동의 의사록의 조인으로 한국은 총 70여만 명의 국군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50년부터 1988년까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군사원조는 군원계획(MAP : Military Assistance Program) 54억 7,000만 달러, 국제군사교육훈련(IMET : International Military Education & Training) 1억 7,000만 달러이며, 유상 군원은 대외군사판매(FMS : Foreign Military Sales) 50억 5,000만 달러, 상용판매 14억 3,000만 달러, FMS차관 23억 5,000만 달러에 달한다.



박정희 의장-케네디 대통령 정상회담 (1961.11.17.)

1961년 5월 16일 정권을 잡은 박정희 의장은 미국을 방문해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공동성명서를 통해 케네디는 1963년 민정 이양 약속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에 최대한의 경제원조를 약속했다. 또한, 한국이 외부로부터 공격받을 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 군사력 사용을 포함한 모든 원조를 '즉각' 제공한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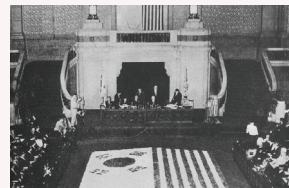


비둘기부대 출국 환송식(1965.2.9.)



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 (1968.4.17.)

1968년 북한에 의한 청와대 습격(1.21.)과 푸에블로호 납치사건(1.23.) 등이 발생하여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자 한-미 간 긴밀한 안보협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호놀룰루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한미 연례 국방각료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우리의 안전보장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 동년 5월 워싱턴에서 1차 한미 국방각료회의가 열린 것을 시작으로 매년 한-미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되었으며, 71년 4차 회의 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 : 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은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체결되어 1967년 2월 9일 발효되었다.

「행정협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협정은 전문과 본문 31개 조 이외에도 합의 의사록, 합의양해각서 및 교환각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한미군 주둔 시 필요한 토지, 시설, 출입국 관리, 통관과 관세, 형사재판권 등 양국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군의 베트남전 파병 (1964~1973)

미국은 베트남전에 깊이 개입하면서 1964년 5월 한국 등 자유 우방 25개국에 베트남 정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1964년 5월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심의와 국회 동의를 거쳐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하였다. 1964년 9월 1차 파병 이후 1966년 4차 파병까지 지속적 증원으로 한국군 파병 병력은 약 4만 8천여 명에 달했으며, 1973년 베트남전쟁 종식을 위한 「파리평화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군은 완전히 철수하였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전투경험을 축적시키고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킴으로써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촉진하였다. 또한, 공공-상업 차관의 도입, 미국의 군원 이관 중지, 주한미군 계속 주둔, 대미 수출 증가, 베트남 시장에서의 외화획득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1969 ~ 1979 자주국방 모색

1969년 「닉슨 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을 계기로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는 부대 창설 및 율곡사업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연합훈련 강화 및 연합군사령부 창설로 이어져 실질적으로는 한미 군사관계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1969.7.25.	1971.3.27.	1971.7.12.~13	1973.3.29.	1976.8.18.	1977.3.9.	1978.11.7.	1979.7.1
「닉슨 독트린」 발표	미 7사단 철수	제4차 안보협의회의	주월 한국군 베트남 철수 완료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 발표	한미 연합 사령부 창설(CFC)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 미군 계속 주둔 언명

「닉슨 독트린」 발표 (1969.7.25.)

닉슨 행정부의 대외 및 군사 정책 기조는 「닉슨 독트린」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축소시키려는 「닉슨 독트린」은 1970년 외교백서를 통하여 “어떤 나라의 국방, 경제도 미국 혼자만이 떠맡을 수 없다. 세계 각국, 특히 아시아-중남미 국가들은 자국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한, “미국은 아시아 및 극동에서 군사적 개입을 줄이고, 우방국이 핵 공격이 아닌 형태의 공격을 당할 경우 미국은 군사 및 경제적 원조만 제공하며, 당사국은 미 지상군 병력을 기대하지 말고 1차적 방위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미 정부는 의회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 National Security Council)의 권고에 따라 1971년 6월까지 아시아에서 총 42만 명의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하고, 그 가운데 한국으로부터 2만 명의 미군을 철수하고 동시에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지원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1971년 2월, 주한미군 감축과 한국군 현대화의 조건에 대한 한-미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미 육군 7사단을 비롯한 2만 명의 병력이 철수하였다.



정래혁 국방부장관과 레이드 미 국방부장관

제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1971.7.12.~13. 서울)

한미 국방장료회담이 제4차 회의부터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개칭되어 안보협력관계를 공고히 함은 물론 연합방위태세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CFC :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창설 (1978.11.7.)

CFC창설과 더불어 「전략지시 1호」에 의거, 연합군 사령관은 구성군 사령부를 통해 한미 양국군을 작전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F-4D 팬텀 전폭기 도입 (1969.9.28.)

1·21사태를 계기로 1968년도 한미 정상 회담에서 우리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969년도에 F-4D 18대가 도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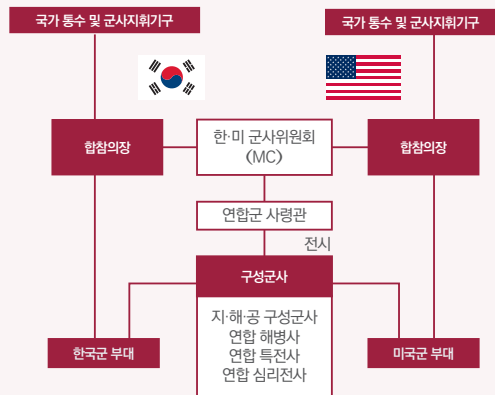
〈미 제7사단 이한 행사〉 (1971.3.27./서울 용산 제8군 연병장)

미 제7사단 철수 (1971.3.27.)

1971년 미 7사단 2만 명의 병력이 철수하였다. 당시 주한미군 감축에 대비하여 한미 연합 공수기동훈련인 포커스레티나 훈련과 프리덤 볼트 훈련을 강화하고, 현존 전력의 공백 보안을 위해 1971년 7월 1일 한미 제1군단을 창설하였다.

카터 행정부의 주한 미 지상군 철수 계획 발표 (1977.3.9.)

당시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1단계(1978~1979)에서는 미 제2사단 1개 여단과 기타 지원병력 등 6천 명을 철수하고, 2단계(~1980.6.)에서는 보급 및 지원 병력 등 9천 명을, 그리고 3단계(1981~1982)에서는 남은 2개 여단과 사단본부부를 철수시키되, 공군전력과 정보·통신부대는 계속 주둔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1978년까지 3,400 명의 병력이 철수하였으나, 1979년 카터 대통령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전면 취소되었다.



한미 연합군사령부 창설 이후의 한미동맹 지휘체계

1980~1992 동맹의 재결속

1981년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한미 간 군수지원체계가 정립됨으로써 전쟁지속능력을 보장받게 되었다. 아울러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시작되면서 한-미 군사관계는 동반자관계로 발전하였다.

1981.1.28.	1988.6.8.	1989.8.2.	1990.4.19.	1990.3.24.	1990.11.13.	1991.12.25.	1991.12.31.
전두환 대통령 방미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	미 의회 「년-워너 수정안」 채택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 구상(EASI) 보고	한태평양훈련 최초 참가	제22차 SCM, 방위비 분담금 최초 합의	소비에트연방 해체, 탈냉전시대 도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채택



대미 외교 강화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과 1985년 4월, 2차례에 걸쳐서 미국을 방문하고, 1983년 11월에는 레이건 미 대통령을 서울로 초청하여 3차례에 걸쳐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전시 대비 한미 군수지원체계 정립

1) 전시주둔국지원(WHNS : Wartime Host Nation Support)
위기 또는 전쟁 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증원군의 접수와 이동 및 전쟁지속을 위하여 제공하는 군사 및 민간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 1985년 제17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되어 1987년 제19차 SCM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1991년 제23차 SCM에서 「전시지원일괄협정」에 서명하였으며, 1993년에는 「전시지원 연합운영위원회 강령」을 체결하였다.

2) 전쟁예비물자(WRSA :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전쟁예비물자란 미국이 동맹국 내 비축한 전쟁물자를 말하며, '소요 부족품 목록(CRDL : Critical Requirements Deficiency List)은 미군의 평시 운영 재고 또는 전쟁 예비 물자 중에서 WRSA로 지정된 물자 이외에 동맹국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방위물자를 말한다. 미국 소유 전쟁물자의 한국 판매 관련 협의는 각각 1982년, 1984년에 한미 국방장관 간 이루어졌는데, 정상적인 판매의 경우 미 의회의 사전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치는 데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시 초기에 한국군의 부족 장비 및 물자를 적시에 보충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3) 상호군수지원협정, (MLSA : Mutual Logistics Support Agreement)
전 평시 연합 연습 및 훈련, 작전 및 합동 임무기간 중,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시적인 소요 발생 시 한-미 양국 간 상호 군수 지원을 목적으로 1988년 한미 국방장관 간 체결한 협정이다. 상호 군수지원의 절차는 어느 일방의 요청 시 지원하고, 사후에 동종의 물자, 용역 또는 현금으로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보급품, 용역 등이다.



오자복 국방부 장관과 칼루치 미 국방부 장관이 「상호군수지원 협정」 협정서에 서명을 마치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1988.6.8.)

「년-워너 수정안」과 「동아시아 전략구상」

1) 년-워너 수정안(Nunn-Warner Amendment)
1989년 7월 상원 본회의에 제출된 이 법안은 ① 미국은 동아시아 및 한국에서의 주둔 군사력의 위치, 전력구조, 임무를 재평가하고, ② 한국은 안보를 위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③ 한-미는 주한미군의 점진적 감군의 필요성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에 주한미군에 관한 철수계획을 수립하고 1990년 4월까지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보고할 것을 규정하였다.

2) 동아시아 전략구상(EASI : East Asia Strategic Initiative)
1990년 4월, 미 국방부는 상원에서 통과된 「년-워너 수정안」에 따라 EASI를 의회에 제출하였다. EASI의 핵심은 아-태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구소련에 의한 안보위험의 감소, 국방예산의 삭감 등 제한 요인을 고려하여 아-태지역에서의 주둔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 역할'에서 '보조적 역할'로 변경하고 우리 정부가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한미 군사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한태평양훈련(RIMPAC : Rim of the Pacific)



한태평양훈련은 유사시 태평양 주요 해상 교통로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태평양 연안국들의 연합작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 협력관계를 증진할 목적으로 미 태평양사령부 주관하에 1971년부터 2년에 1회씩 태평양 상에서 실시해 온 대규모 연합해상기동훈련으로서 우리 해군은 1990년 12회 훈련부터 참가해 오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1.12.31.)

1990년대 들어 북한의 핵개발 의도가 밝혀지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북한의 핵개발 시도를 봉쇄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통하여 핵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동 선언은 1991년 12월 31일 채택된 뒤 1992년 2월 19일 「남북기본합의서」와 함께 발표됐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에서 임동원 남측대표와 최우진 북측대표가 「비핵화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1992.1.14.)

1993 ~ 2000 새로운 안보 동반자관계 모색

1994년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환수됨으로써 한국군은 독자적인 작전지휘체계를 확립하게 되었고, 전시 대비 연합방위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1995년 신 아태전략(EASR)을 발표함으로써 동아시아 전략구상(EAS)에 따른 주한미군 철수계획을 전면 중지시켰다.

1994.10.21.	1994.12.1.	1995.2.27.	1995.5.8.-5.19.	2000.6.23.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체결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 아태전략(EASR) 발표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 실시	한미 국방부 간 대한민국 내 유해발굴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미·북 제네바기본합의」 (1994.10.21.)

북한은 1950년대부터 원자력 기술연구를 해왔으며, 1985년 12월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한 후 IAEA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거부해 오다가 1992년 1월 협정을 체결하고 핵 물질 및 핵 시설에 대한 최초 보고서'를 IAEA에 제출하였다.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 IAEA는 6차례 임시 핵사찰을 실시했고, 영변 핵 단지의 미신고된 2개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하였다. 이에 북한은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하였다.

이후 양국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북 고위급회담을 진행했고, 그 결과 1994년 10월 21일 북한의 핵시설을 동결·해체하는 대신 200만 Kw 경수로와 대체에너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미·북 제네바기본합의」를 체결하였다.



영변 핵 시설 내부 사진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1994.12.1.)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을 맥아더 유엔 군사령관에게 이양하였다. 1978년 창설된 한미 연합군사령부가 전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여 오다가 1994년 10월 6일 제26차 SCM 및 제16차 MCM 시 '전략지시 2호'를 승인함으로써 1994년 12월 1일 부로 정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전환되었다.



한승주 외무부 장관과 레이니 주한 미대사가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정전시 작전통제권을 12월 1일부터 한국군에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교환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1994.11.30.)



김영삼 대통령이 이양호 합참의장으로부터 '정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신고를 받고 합동참모본부기에 '정전시 작통권 환수'라는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 (1994.12.1.)

신 아태전략 (EASR, 1995.2.27.)

1995년 2월 작성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전략(United States Security for the East Asia Pacific Region)', 일명 '신 아태전략 (EASR : East Asia Strategic Report)'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아태 지역 주둔 미군을 적어도 20세기 말까지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다.

연합전시증원 (RSOI :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 Integration)

연합전시증원연습은 전시 미 증원군이 최초 한반도 도착 시 수용, 대기, 전방으로 이동 및 전장으로 통합되는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으로, 이를 지원하는 한국군의 전시 지원, 상호 군수 지원, 동원 및 한국군의 전투력 복원 절차 등을 동시에 숙달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휘소 연습이다. 이 훈련은 1994년부터(한미연합훈련은 1995년부터) 실시해 오다 2008년 키리졸브 연습으로 명칭이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미 연합전시증원연습(RSO)에 참가하기 위해 부산에 입항하고 있는 미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2007.3.22.)

미군 유해발굴에 관한 합의각서 체결 (2000.6.23.)

육군 50사단 장병과 주한미군 501여단 소속 장병들이 경북 칠곡 적오산에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1 ~ 2009 전략적 동반자로의 동맹관계 격상

9·11테러 이후 미국은 군사변혁과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구상에 따라 우방국의 역할을 확대해 나갔다. 한국 또한 국력 신장에 따른 보다 성숙한 동맹관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발현되었다. 이러한 대내외적 변화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한 합의의 이끌어내기에 이르렀다.

2001.12.18.	2002.3.29.	2003.4.30.	2004.10.6.	2004.10.22.	2007.2.23.
아프가니스탄 해상부대 파병	「한미 연합토지관리 계획 (LPP) 협정, 체결	이라크 서희부대 파병	「용산기지이전계획(YRP) 협정, 및 「LPP 개정 협정, 체결	제36차 SCM, 한미 안보정책구상 (SPI) 추진 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2012.4.17일로 합의

9·11테러 이후 미국의 전략 변화

9·11테러 이후 미국의 국가안보는 더욱 다양하고 불확실한 위협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비대칭 위협은 미국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유형도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이며 비군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미국은 새로운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군사변혁(Transformation)을 추진하였다.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된 군사능력을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전력 구조의 조정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위협중심(Threat-Based)에서 능력중심(Capability-Based)으로 군사력 기반을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WMD를 개발·사용하는 적성국과 테러조직에 대해서는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냉전시대 전략인 대규모 병력을 해외에 고정 배치하는 대신, 신속한 전력투사와 장거리 정밀타격능력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군사변혁 (Transformation)

군사변혁의 목적은 새롭게 불확실한 비대칭적 도전들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다 민첩하고 효율적인 미군을 만드는 것이다. 핵심은 고도의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적은 병력으로 보다 많은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작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아울러 위협 발생 시 미군이 신속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기동성과 작전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군은 육군을 신속·정확·치명성 전개성이 향상된 여단급 부대로 재편하고, 각 군 간의 합동성을 증진시키며, 특수전 부대의 능력과 규모를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해상 경계용 최선에 구축함을 편성하는 등 본토 방위 능력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

(GPR : Global Posture Review)
GPR은 동맹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증진시켜, 범세계적·지역적 문제에 동시에 대처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시기에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전개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주둔 미군기지는 동맹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누어지고,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첨단 과학기술에 의한 정밀무기의 치명성 및 효과성을 증대시켜 병력, 부대 또는 기지의 숫자가 아닌 능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합의 (2007.2.23.)

김장수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부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 한미 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 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 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

한국군의 해외파병

6·25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위기를 극복했던 한국은 50여년 만에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는 국가가 되었다.



1) 아프가니스탄

9·11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군은 2001년 10월 아프가니스탄에 '항구적 자유작전'을 개시했다. 이에 한국은 2001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해군·공공수송지원단, 의료·건설 지원단을 파병하여 다국적군 대테러 작전을 지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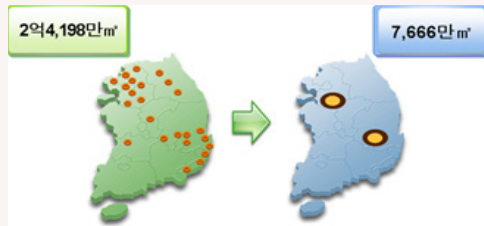


2) 이라크

2003년 3월 '이라크 자유작전'이 시작되자 한국은 동년 4월 건설·의료 지원단을 파병했다. 2004년 2월에는 자이툰부대가 창설돼 2008년 12월까지 아رب일지역의 재건을 위한 각종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자이툰부대는 9진까지 연인원 1만 9,000여명이 파병된 바,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파병으로 기록됐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기지를 2개 권역(평택, 대구)으로 재배치하는 사업으로 용산기지이전계획(YRP : Yongsan Relocation Plan, 서울 도심 9개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미 2사단 등을 평택·김천·왜관지역 등으로 이전)으로 구분된다.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추진 합의 (2004.10.22.)

제36차 SCM에서 2005년부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과 관련된 의제들을 논의하기 위해 '한미안보정책구상(SPI : Security Policy Initiative)'이라는 협업체를 구성 및 운영키로 합의하였다. 동 협업체는 한측 국방부 정책실장과 미측 국방부 아태 차관보를 수석 대표로 하며, SCM으로부터 회의 운영지침을 받고 필요시 결과를 SCM에 보고하게 된다.

2010 ~ 2021 호혜적·상호보완적 동맹관계 발전

미국은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주력하였으나, 중국의 부상에 따라 2012년 아시아 회귀 정책(Pivot to Asia)을 천명하면서 아시아 내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한국 등 역내 동맹·우방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2010.6.27	2011.10.28.	2013.2.12.	2014.10.23.	2018.10.31.	2020.11
전략권 전환시기 2015년으로 조정 합의	한미통합국방협약체(KIDD) 신설	제3차 북한 핵실험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 합의	연합방위지침 승인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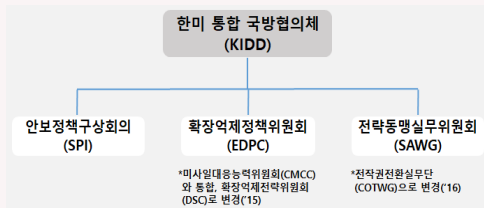
미국의 아시아 재형(Asia Rebalancing)

오바마 행정부는 2012년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로 대표되는 신국방전략지침(New Strategic Guidance)을 발표하고, 군사력 운용의 중심축을 아시아로 이동시켰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해군력의 60% 이상을 아시아 지역에 전개하는 등 역내 군사력 주둔(military presence) 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한국 등 역내 동맹·우방국과의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중·러에 대해 국제질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대중국·대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특히,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 사령부로 개칭하고, 역내 지상·해상·공중 전력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중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환되었음을 분명히 하였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하였다. 이에 한미 양국은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작성하여 북한의 국지도발 시 도발성과 강도에 따른 한미 양국의 역할 분담과 업무 협조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을 방어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양국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었다.

한미 통합국방협약체(KIDD) 신설 개편



한미는 양국 국방당국 간 협의체계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2011년 제43차 SCM에서 '한미통합국방협약체(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5년 제8차 KIDD에서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ounter Missile Capability Committee)와 EDPC(Extended Deterrence Policy Committee)를 확장억제전략위원회(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로 통합하였으며, 2016년 제9차 KIDD에서는 SAWG(Strategic Alliance Working Group)를 대체하여 전략권전환실무단(Conditions-based OPLAN Transition Working Group)을 출범시켰다. 한미는 KIDD를 통해 다양한 동맹 현안과 미래발전 과제는 물론, 확장억제 실효성 보장, 전략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보건협력 - 코로나19 공조

전세계적 코로나19 확산은 방역·인도적 지원 분야에서의 한미 간 공조를 통해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5월 한국은 미국에 마스크 200만장을 긴급 지원하였고,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합의하였다. 또한, 미국은 2021

년 6월 한국의 국방·외교 관련자를 대상으로 101만 명분의 안센백신을 공여하였다.

조건에 기초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한미는 2009년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및 연평도 포격전 등으로 북한의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2010년 정상회담에서 전략권 전환 시기를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후 2013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는 등 안보 상황이 악화되자 한미 양국은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합의한 전환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전환 시기를 결정하는 '조건에 기초한 전략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2018년 한미는 현재의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계를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계로 변경하는 연합지휘구조를 포함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합의하였다. 한미는 전략권 전환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한미는 제50차 SCM에서 동맹 국방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동의 국방비전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1년 간의 공동연구를 통해 2020년 11월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발표하였다. 국방비전에는 한미가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와 번영 추구, △국제법에 따른 분쟁의 평화적 해결, △사자우 향행 등 공동원칙을 바탕으로 공동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해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차 핵실험, 2016년 4, 5차 핵실험에 이어 2017년에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및 도발을 통해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였다. 이에 한미동맹은 미 B-52B-1B 장거리 폭격기와 F-22 스텔스 전투기, 핵잠수함, 항모전단 등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적 전개를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시행하고 있다.



B-52와 F-22 한반도 전개

2022 ~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한미동맹은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의 핵심축으로, 변화하는 전략환경과 글로벌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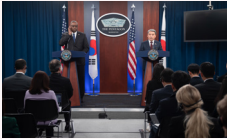
2022.5.21.	2022.8.16.~17.	2022.9.16.	2022.11.3.	2022.11.15.	2022.12.28.
한미정상회담	제2차 KIDD	제3차 EDSCG	제54차 SCM	연합사 이전 완료	한국 인태전략 발표

한미 정상회담 (2022.5.21.)



양 정상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하기로 하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여타 지역에서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양 정사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인태지역에서 상호 협력 또한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맹협력 범위와 수준의 확대·심화



제54차 SCM

한-미는 정상 간 합의와 KIDD, EDSCG, MCM, SCM 등 다양한 안보협력체제를 통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한미 국방당국은 제54차 SCM을 통해 △대북 공조,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 제고,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분야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성과들을 도출하였다.

(EDSCG)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2022년 9월 차관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회의를 4년 만에 재개하였다. EDSCG는 동맹의 억제력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 강화와 관련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양측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미국은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제3차 EDSCG 회의는 동맹의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미국 확장억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와 실행력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정책 공조) 한-미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대응 노력과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 수 있는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확장억제 신뢰성 제고) 한-미는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안보 도전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보다 강력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를 위해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실행 등 분야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을 개정하고,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ITT)을 연례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미원자력추진 항모 레이건함 부산입항

한편,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정상의 공약에 따라 한-미 국방당국은 보다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키기로 하였다.

(연합방위태세 강화)

한-미는 2023년 연합연습과 연계한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에 합의하고, 사드 기지 등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마련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또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를 신설하고, 미사일발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시키기로 하였다.



한미연합 제병합동 도하훈련

(국방과학기술, 방산분야 협력 확대) 한-미는 첨단기술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양자, 센서 및 전자전,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5G)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한-미는 동맹 70년 역사를 재조명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동맹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Indo-Pacific Strategy)」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2월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과 관여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중국의 강압과 공격성,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프로그램 확대 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역내 국가들과 함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맹관계 현대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 등 역내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함께 번영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2022년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였다.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은 역내 자유, 평화, 번영 구현을 3대 비전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원칙에 입각하여 역내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기초를 표방하였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연합사 이전 완료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는 1978년 창설 이래 한반도 전쟁 억제 및 대한민국 방어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2022년 11월 연합사는 평택 (Camp Humphreys)으로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한미연합군사령부는 한층 더 강화된 작전적 능력을 통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이다.



연합사 부대이전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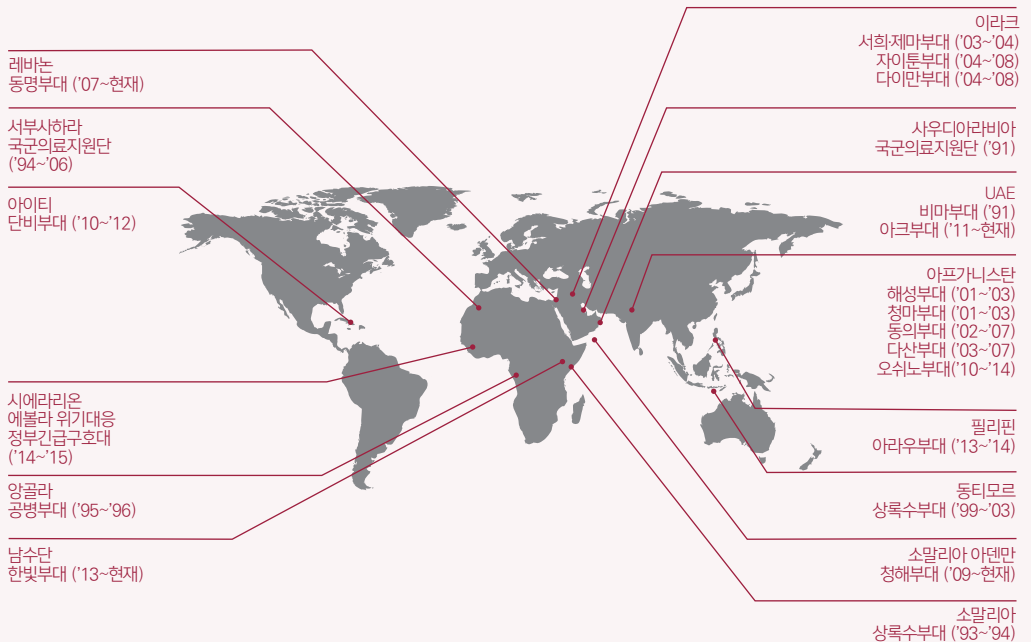
1. 개요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6.25 전쟁이라는 국난을 극복하고 한 세대만에 도움을 받았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탈바꿈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받으면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 걸프 전쟁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9월 유엔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였다. 2022년 12월 현재까지 세계 30개국에 총 6만여 명의 장병을 파견하여 글로벌 안보 증진과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군의 파병활동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발전하였다. 2009년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0년에는 해외파병 상비부대를 창설하는 등 파병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체계가 정립되었다. 또한, 2021년에는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관련 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의료역량에 기반한 6대 기여공약을 제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유엔 및 관련 국가들과 협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유엔에 새로운 평화유지활동 모델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서 국가 위상을 확립해 나가고 있다.

[표-1] 해외파병활동 지역

(2022년 12월말 기준)



[표-2] 역대 정부별 파병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노태우 정부 (88~93)	• '91년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파견 • '91년 UAE 공군수송단 파견
김영삼 정부 (93~98)	• '93년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파견 • '95년 앙골라 공병부대 파견
김대중 정부 (98~03)	• '99년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파견 • '02년 아프간 동의부대 파견
노무현 정부 (03~08)	• '03년 아프간 다산부대 파견 • '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견 • '07년 레바논 동명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라이베리아(03), 부룬디(04), 수단(05), 네팔(07), 수단 다푸르(07)
이명박 정부 (08~13)	• '09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파견 • '10년 아프간 오쉬노부대 파견 • '11년 UAE 아크부대 파견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코트디부아르(09), 서부사하라(09), 아이티(09), 남수단(11) • '10년 아이티 단비부대 파견 • '10년 해외파병 전담부대 '온누리부대' 창설
박근혜 정부 (13~17)	• '13년 남수단 한빛부대 파견 • '14년 에볼라 긴급구호대 파견 • '13년 필리핀 아라우부대 파견
문재인 정부 (17~22)	• 유엔 PKO 임무단 참여 : 예멘(19)

1991. 1.	1991. 2.	1993. 7.	1994. 8.	1995. 10.	1999. 10.	2001. 12.	2002. 2.	2003. 3.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	UAE 비마부대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앙골라 공병부대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아프가니스탄 해상-청마부대	아프가니스탄 동의부대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	
2003. 4.	2004. 4.	2004. 10.	2007. 7.	2009. 3.	2010. 2.	2010. 6.	2011. 1.	2013. 3.	
이라크 서희/제마부대	이라크 자이툰부대	이라크 다이만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아프간 오쉬노부대	UAE 아크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필리핀 아라우부대

2. 유엔평화유지활동

유엔은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평화유지활동(PKO : PeaceKeeping Operation)을 적극 실시하고 있으며, 1988년 유엔 평화유지군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는 등 이러한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3년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를 시작으로 2022년 12월 현재까지 25개 임무지역에 2만여 명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부대 단위로는 7개 임무지역에 1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임무 유형 별로 공병부대 4개(소말리아 상륙수부대, 앙골라 공병부대, 아이티 단비부대, 남수단 한빛부대), 전투부대 2개(동티모르 상륙수부대, 레바논 동명부대), 의료부대 1개가 파병되었다. 이 중에서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는 현재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3] 부대단위 유엔 PKO 참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기 간	부대	연인원(명)	기 간	부대	연인원(명)
1994년 7월 ~ 1994년 8월	소말리아 상륙수 부대	516	2007년 7월 ~ 현재	레바논 동명부대	8,437
1994년 8월 ~ 2006년 5월	서부사하라 의료지원단	542	2010년 2월 ~ 2012년 12월	아이티 단비부대	1,425
1995년 10월 ~ 1996년 12월	앙골라 공병부대	600	2013년 3월 ~ 현재	남수단 한빛부대	4,238
1999년 10월 ~ 2003년 10월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3,283			



소말리아 상륙수부대 (1993.7. ~ 1994.3.)

소말리아 발라드에 파견된 상륙수부대는 내전으로 황폐화된 도로(80km)를 보수하고 관개수로(18km)를 개통하여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였고, 사랑의 학교와 기술학교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1994년 3월 지역 정세의 악화로 9개월 만에 철수하였지만, 상륙수부대의 완벽한 임무수행은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한국군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계기가 되었다.

*상륙수부대 : 소말리아 땅을 푸른 옥도로 바꾸겠다는 의미



서부사하라 국군의료지원단 (1994.8. ~ 2006.5.)

1994년 8월부터 12년 동안 서부 사하라에 파견된 국군의료부대는 현지 유엔요원에 대한 의료지원, 지역 주민에 대한 방역 및 전염병 예방활동을 수행하여 서부사하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1만 여km 떨어진 서부사하라 국군의료부대까지의 보급과 지원과정에서 습득된 노하우는 우리 군의 군수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앙골라 공병부대 (1995.10. ~ 1996.12.)

1995년 10월부터 1996년 12월까지 앙골라 우암보에 공병부대를 파견하여 내전으로 파괴된 교량을 건설하고 비행장을 복구하는 등 앙골라 평화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소말리아, 서부사하라, 앙골라에서의 파병활동은 1996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 (1999.10. ~ 2003.10.)

1999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동티모르에 우리 군 최초로 보병부대를 파견하여 지역재건과 치안회복을 지원하여 동티모르 평화정착에 기여하였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는 1999년 10월 파병 당시에는 다국적군에 참여하여 치안회복에 주력하다가 2000년 2월부터 UN PKO로 전환하여 임무를 수행하였다.



레바논 동명부대 (2007.7. ~ 현재)

동티모르에 이은 두 번째 보병부대이자 한국군 최장기 파병부대로 정전감시 등 군사작전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도로포장, 학교 및 관공서 시설물 개선 등 주민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명부대 전 장병은 UN 평화유지군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영예인 유엔메달을 받았으며, 현지주민들은 '신이 내린 선물', '친숙한 이웃'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아이티 단비부대 (2010.2. ~ 2012.12.)

2010년 아이티에서 발생한 지진의 잔해제거, 도로복구, 심정개발 등의 재건지원과 태권도, 컴퓨터 등의 교육 프로그램 등의 민간적전을 실시하였다. 특히 콜레라가 창궐한 2011년 10월 이후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에 주력하면서 난민촌 방역활동 등 전염병 예방활동도 수행하였다.



남수단 한빛부대 (2013.3.-현재)

현지주민의 이동과 물류에 필수적인 도로건설 및 보수공사와 백나일강 범람 대비 차수벽 설치 등 다양한 재건사업을 실시하고, 한빛직업학교, 한빛농장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민군작전을 모색하여 21세기 아프리카 신생국인 남수단의 발전을 지원하는 한 줄기 빛이 되고 있다. 남수단 주민에게 한빛부대는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다.

부대 단위 파병이외에도 우리나라는 개인 단위 유엔 평화유지활동 파병도 실시하고 있다. 18개 임무지역에서 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임무단장, 참모요원 및 연락장교, 오퍼버 요원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장성급으로는 지금까지 4명이 임무단장 또는 군사령관을, 1명은 군사령부 참모장을 역임하였다. 영관급 및 위관급 장교는 참모요원 및 연락장교 200여 명, 군 오퍼버 요원 500여 명이 분쟁의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였으며 현재에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레바논평화유지군,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남수단 임무단 등 4개 임무단에서 23명이 임무수행하고 있다. 그 외에 유엔 PKO의 본산인 유엔 평화활동국에도 많은 장교들이 근무하면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여 왔다. 개인 단위 UN PKO 파견 현황은 <표-4>와 같다.

[표-4] 개인 단위 파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기간	유엔 임무단	연인원(명)	주요 임무
1994년 10월~ 현재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224	정전 감시
1994년 11월~ 2009년 7월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88	정전 감시
2000년 1월~ 2004년 6월	동티모르 임무단	59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2년 1월~ 2003년 12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	1	평화유지군 사령관
2003년 7월~ 2010년 12월	아프가니스탄 임무단	7	참모 활동
2003년 10월~ 2016년 1월	라이베리아 임무단	24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4년 9월~ 2006년 12월	부룬디 임무단	4	참모 활동
2005년 11월~ 2011년 7월	수단 카르툼 임무단	46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7년 1월~ 현재	레바논 평화유지군 사령부	57	참모 활동
2007년 3월~ 2011년 1월	네팔 임무단	13	정전 감시, 참모 활동
2007년 6월~ 2021년 6월	수단 다푸르 임무단	19	정전 감시
2009년 7월~ 현재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	44	정전 감시
2009년 7월~ 2017년 1월	코트디부아르 임무단	14	정전 감시
2009년 11월~ 2014년 12월	아이티 안정화임무단	10	참모 활동
2011년 7월~ 현재	남수단 임무단	72	참모 및 협조 활동

3. 다국적군 평화활동

20세기 말 냉전 종식 이후 테러, 해적활동 등이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새롭게 대두되었다. 국제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안보기구 또는 특정 국가 주도로 다국적군을 구성해왔다. 우리나라는 1991년 1월부터 시작된 걸프전쟁 기간에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국군의료지원단을 사우디아라비아에 최초로 파병하였으며, 이후 2001년 아프가니스탄, 2003년 이라크, 2009년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각각 우리 군을 파견하였다. 2022년 12월 현재까지 26개 임무지역에 3만 9천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에도 6개 임무지역에서 312명이 임무수행 중에 있다. 부대 단위 다국적군 파병현황은 <표-5>와 같다.

[표-5] 부대단위 다국적군 참여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기간	파병지역, 부대(임무단)	연인원(명)
걸프전쟁	1991년 1월 ~ 1991년 4월	사우디, 국군의료지원단	154
	1991년 2월 ~ 1991년 4월	UAE, 비마부대	160
아프간전쟁	2001년 12월 ~ 2003년 9월	싱가포르, 해상부대	823
	2001년 12월 ~ 2003년 12월	싱가포르, 청마부대	1,245
	2002년 2월 ~ 2007년 12월	아프간, 동역부대	786
	2003년 3월 ~ 2007년 12월	아프간, 다산부대	1,329
	2010년 6월 ~ 2014년 6월	아프간, 오쉬노부대	1,745
이라크전쟁	2003년 4월 ~ 2004년 4월	이라크, 서희부대	952
	2003년 4월 ~ 2004년 4월	이라크, 제마부대	185
	2004년 4월 ~ 2008년 12월	이라크, 자이툰부대	17,708
	2004년 10월 ~ 2008년 12월	이라크, 다이만부대	1,324
대해적작전	2009년 3월 ~ 현재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12,218

걸프전쟁 파병

1990년 8월 2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1월 15일까지 이라크가 쿠웨이트로부터 철군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이라크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국이 주도한 다국적군과의 걸프전쟁이 발발하였다. 우리 정부도 동맹국에 대한 지원문제를 신중히 고려하던 중에 1990년 8월 18일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이 동맹국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받아 사우디아라비아에 국군의료지원단, 아랍에미리트(UAE)에 공군수송단(비마부대)을 파견하였다. 국군의료지원단은 사우디의 알누아이리아 병원에서 총 1,634명의 군인진료와 87명의 대민진료를 하였으며, 공군 비마부대는 37일간 국내 공수임무 대비 3배에 달하는 323소티의 화물·인원 공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국위를 크게 선양하였다. 걸프전쟁 파병은 냉전 이후 최초의 파병으로, 우리 군에 실전경험을 축적하고 동맹국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군의료지원단 (1991. 1~1991. 4)

사우디 알누아이리아 병원에 총 154명의 의료요원 및 지원요원이 파견, 사막전 및 현대전 하에서의 전상자 처치 경험을 통해 군진의학 및 의무근무·운용 등 전시 의무지원체계 발전에 관한 소중한 경험 및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UAE 비마부대 (1991.2~1991.4)

한국 공군 보유의 C-130H 항공기와 160명의 인원이 파견되어. 총 323소티, 461시간 57분의 비행시간동안 약 24만km를 비행하면서 병력 1,405명과 화물 713.3톤의 공수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UAE, 사우디, 오만 등 아라비아 반도 일대의 27개 기지를 오가면서 한국 공군전력의 밑거름이 될 소중한 실전경험을 축적하였다.

아프간전쟁 파병

2001년 9·11테러 이후, 정부는 '항구적 자유작전'(OEF:Operation Enduring Freedom)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테러와의 전쟁'에 동참하였다. 2001년 12월에 해 공군 수송지원단 해상·청마부대, 2002년 2월에 국군의료지원단 동의부대, 2003년 3월에 건설공병지원단 다산부대를 파견하였다. 2010년 6월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와 재건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방재건팀(PRT: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을 설치하였고 지방재건팀 방호를 위해 오쉬노부대를 파견하였다.

해군 수송지원단인 해상부대(상륙함 1척, 승무원 171명)는 2001년 12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싱가포르를 모항으로 해상수송임무 15회, 탐색지원 2회 등 총 17회의 임무를 실시, 총 92,692NM을 항해 하면서 약 5,300여 톤의 물자를 수송하였다.

공군 수송지원단인 청마부대는 2001년 12월 승무원 76명으로 임무를 개시한 후 김해 비행장을 모기지로 하여 싱가포르와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왕래하면서 2003년 12월까지 총 81회의 수송작전을 실시하여 600명의 병력과 310톤의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약 777,182NM을 비행하였다.

동의부대는 약 90명 규모의 의료 지원인력으로 구성하여 2002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26만여 명의 동맹군과 현지 주민을 진료 하였다.

* 동의부대는 조선 중기 명적인 허준의 의학서적 '동의보감'에서 따온 명칭

다산부대는 약 150명 규모의 공병부대로 2003년 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토목 건축 등 400여 건의 공병지원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 하였다. 또한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에 민사반을 참여시켜 전쟁난 민과 지역 민간인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였다.

* 다산부대는 조선 후기 실학자로서 거중기 발명과 수원 화성을 축조한 정약용의 호에서 따온 명칭



우리 PRT 요원들에 대한 경호작전 임무를 수행 중인 오쉬노 부대

유엔의 아프간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촉구 및 아프간 정부의 재건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0년 6월 민·관·군 통합의 아프간 지방재건팀(PRT)을 파르완주에 설치하고 오쉬노(Ashena)부대를 파견하였다. 오쉬노부대는 민간주도의 우리 PRT가 안전하게 재건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PRT 요원 보호와 기지방호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한울다리 작전'을 통해 지역 10개 마을의 원로들을 부대로 초청하고 파르완 축구팀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현지 주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기지에 대한 위협을 경감하였다.

이라크전쟁 파병

우리 정부는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자유작전'(OIF: Operation Iraqi Freedom)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4월 공병·의료지원단인 서희·제마부대를 파견하였고, 2004년 이라크 평화지원단인 자이툰 사단을 파견하였다. 서희·제마부대는 2004년 4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다국적군 지원과 인도적 차원의 전후 복구를 지원하면서 현지 주민에 대한 의료지원을 수행하였고 2004년 1월 추가 파병된 자이툰부대에 통합되어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3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서희부대는 미군, 이탈리아군, 루마니아군 등 동맹군 기지 보강 및 건설지원으로 70여 건의 공사와 학교보수와 급수 및 오·폐수 처리 등 전후 복구공사 50여 건을 완수하였다. 제마부대는 미군과 동맹군에 대한 의료지원과 전후 인도주의적 차원의 이라크 대민 의무지원을 위하여 유엔 LEVEL II (+)급 수준의 의료진과 장비를 운용하여 21,000여 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이후 2004년 4월에 서희·제마부대는 자이툰부대의 직할대인 공병대와 의무대에 임무를 인계하였다.

이라크 나시리아 일대에서 시설 보수작업 중인 서희부대



자이툰이라고 명명된 평화재건지원 부대는 한국군 최초로 파병된 민사지원부대로 이라크 평화재건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동맹군들 사이에 '민사작전의 모델'로 평가받았다. 또한, 자이툰 병원 운영, 학교 및 도로 개통 등 주민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상호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현지인들로부터 '신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자이툰은 이라크 주민들이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좋아하는 올리브를 뜻하며, 평화를 상징



자이툰 부대의 공중 재보급과 교대병력 수송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병된 공군 제58항공수송단인 다이만 부대는 2004년 10월 임무를 시작하였다. 다이만 부대는 병력 143명과 C-130항공기 4대로 편성되었고 2008년 12월까지 2,000여 회에 걸쳐 지구둘레 67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인 270만km를 무사교로 운항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다이만은 아랍어로 '항상 그대와 함께'라는 뜻

대해적작전 파병

1990년대 소말리아의 오랜 내전으로 정치·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해적활동이 급증하였고, 2006년 우리 원양어선 도원호가 피랍되면서 우리 선박과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년 유엔의 해적퇴치 활동 적극 동참 요청을 계기로,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역 해상 안전확보와 우리 선박 보호를 위해 창군 이래 최초의 전투함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를 창설하였다. 이후 청해부대는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아덴만 여명작전,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등 해적퇴치 및 재외 국민 보호를 위한 중요한 작전들을 수행해왔다.

이 밖에도 청해부대와 다국적군과의 협력을 위해 연합해군사령부(CMF: Combined Maritime Forces) 등에 참모 및 협조 장교를 파견하였다. 특히, 2010년 4월 우리 해군 최초로 아덴만과 소말리아 동부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하는 다국적 연합해군부대인 CTF-151의 지휘관에 임명되어 2012년,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9년까지 총 5명이 CTF-151 지휘관을 역임하였으며, 다국적 참모진의 보좌를 받아 미국·영국·파키스탄 함정으로 구성된 기동부대를 지휘하였다. 또한, CTF-151에 참모장교들도 41명이 참여하여 연인원 45명의 한국군 장교가 파병되어 연합해군의 대해적작전에 동참하였다.



해적대응 해상종합훈련 중인 청해부대

우리 해군 최초의 파병부대인 청해부대는 2009년 3월부터 연합해군사령부(CMF)의 해양안보작전에 참여하고 해적들로부터 우리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11년 1월에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 주얼리호와 우리 선원을 구출하기 위하여 '아덴만 여명작전'을 실시하여 우리 국민 전원을 구출하였다. 또한 2011년 3월에는 리비아 정세불안때 따라 리비아의 우리 교민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였다. 이 밖에 청해부대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에 핵심지역인 아덴만 연안 전락수송로의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4. 국방교류협력 활동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비분쟁 지역에서 군사협력과 국제공조 등을 위해 우리 군을 파견하는 것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이나 다국적군 평화활동과는 다른 한국군의 확장된 해외파병 활동 형태이다. 이러한 국방교류협력 활동은 아크부대와 같이 다른 국가(UAE)의 군사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군사협력활동'과, 아라우부대와 같이 다른 국가(필리핀, 시에라리온 등)에 대한 태풍피해복구 지원, 에볼라 질병 지역에 긴급구호대 파견, 실종 항공기에 대한 해상탐색 지원 등을 실시하는 '인도적 지원 활동'의 두 유형으로 크게 분류된다. 현재까지 실시된 한국군의 국방교류협력 활동 관련 파병 현황은 <표-6>과 같다.

[표-6] 한국군의 국방교류협력 활동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기간	파병지역, 부대	연인원(명)
군사훈련협력	2011년 1월 ~ 현재	UAE, 아크부대	2,399
태풍피해복구	2013년 12월 ~ 2014년 12월	필리핀, 아라우부대	824
해상탐색	2014년 3월 ~ 2014년 5월	말레이 해역, 해상탐색단대	39
	2014년 12월 ~ 2015년 1월	인니 해역, 해상탐색단대	21
에볼라 대응	2013년 12월 ~ 2014년 3월	시에라리온, 긴급구호대	16



UAE 아크부대 (2011.1. ~ 현재)

2011년 1월 UAE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파견된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 및 군사협력 목적으로 파견된 최초의 부대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아크부대 파견은 UAE군의 특수전 역량 향상은 물론, 우리 군의 연합작전능력· 특수전 수행능력 신장 및 경제협력 확대 등 국익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아크는 아랍어로 형제라는 뜻



필리핀 아라우부대 (2013. 12. ~ 2014. 12.)

아라우부대는 2013년 12월 9일 육·해·공군, 그리고 해병대가 통합된 합동부대로 창설된 '필리핀합동지원단'이다. 2014년 12월 22일 까지 필리핀을 덮친 태풍 하이옌으로 인한 태풍 잔해물 제거, 공공 시설 복구와 의료지원활동 등 민사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 아라우부대는 유엔의 요청이 있기 전에 필리핀의 요청에 응해 재해 지역에 파병된 부대로, 6.25참전국인 필리핀에게 한국은 반드시 보은하는 국가임을 각인시켰다.

* 아라우는 필리핀어로 '태양'이라는 뜻으로, '희망의 빛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는 의미

5. 평화유지활동의 성과와 미래

지난 30년 동안 한국군은 세계평화의 수호를 위해 지구촌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해 왔다. 짧은 파병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는 국제평화를 증진하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한국군의 실천경험을 축적하고 군사외교의 영역을 확대하며, 분쟁지역에 한국을 알려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우호적 여건을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우리 군은 가는 곳마다 현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동티모르 상륙수부대는 '다국적군의 양'이라는 명성을 얻었고, 이라크 자이툰부대는 '신이 내린 선물', 그리고 아이티 단비부대는 '레오간의 천사'라는 칭송을 받았다. 남수단 한빛부대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리고 있다.

[표-7]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6대 기여공약

스마트캠프 구축	• 한국의 첨단IT기술을 유엔 현지 임무단에 접목한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 남수단 한빛부대 대상 시범사업 추진
헬기 양도	• 유엔의 최우선 소요인 정찰헬기(500MD) 16대를 아프리카 임무단 내 헬기부대 운용 국가에 공여
의료역량 강화	• 유엔 의료훈련센터에 우리 군 의무요원을 파견하여 의무훈련 지원
공병훈련 지원	• 유엔 병력공여국에 공병장비 공여·훈련 지원, 양자 협력을 통해 지뢰제거 등 훈련 지원
여성 PKO요원 역량 강화	• 국방대 국제평화활동센터에 2023년부터 유엔 여군교육과정 유치 및 여성 PKO 참여율 향상
경찰 PKO요원 역량 강화	• 경찰 PKO 요원 파견 확대, 경찰대 PKO 교육센터 활용 유엔 경찰특별교육과정 운용 등

지금까지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재정기여 9위, 병력기여 37위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상을 가진 국가로 성장하였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유엔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개최하게 되었고, 개최국으로서 6개의 기여공약을 제시하였다. 각 공약은 유엔이 현재 당면한 문제(환경보호, 평화유지요원 안전보장, 여성·아동보호 등)들을 해소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적 강점이 유엔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 자산임을 각인시키고 있다.

2022년 우리나라는 기여공약과 연계하여 유엔 및 병력공여국과 다차원적 관계를 수립하였다. 스마트캠프 사업의 경우 한국의 기술능력을 인정받아 2022년 6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엔 평화유지 기술협력 심포지움과 10월 우간다 유엔 역량 강화 워크숍 등에서 한국 국방부가 스마트캠프 관련 발제자로 초청받았다. 500MD 헬기 공여의 경우에도 2022년 7월 유엔, 미국, 헬기양수국(케냐, 엘살바도르)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유엔 아프리카 임무단에 최종 16대의 헬기가 정상적으로 공여되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이들 나라와 계획 수립 및 협조를 추진하고 있다. 공병훈련 지원 역시 캄보디아 및 유엔 삼각협력(TPP: Triangular Partnership Programme) 부서와 협력하여 유엔 임무단 내 캄보디아 군의 공병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2022년 11월 한-캄보디아 국방장관 간 공병장비 양도약정식을 실시하였으며, 2023년 중 장비 양도 및 공병훈련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그 외 여성 PKO 요원 역량 강화 및 의무요원 양성을 위한 유엔 인증 교육 등도 차질 없이 실시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해 우리나라는 우리가 보유한 기술·지식역량을 바탕으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방향을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미래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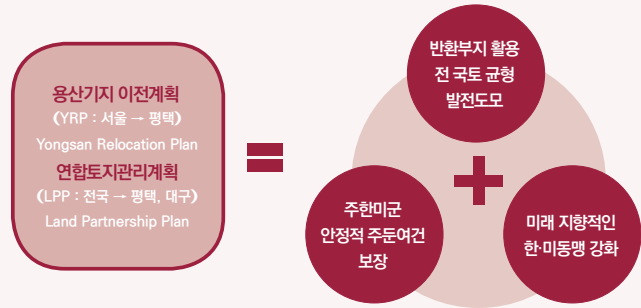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 이행 성과

1. 기지이전의 경과 및 역사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미군기지를 통폐합하여 평택, 대구 등 2개 허브 기지로 재배치함으로써 주한미군에게는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 미래 지향적인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내적으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서울에 있는 주한미군사령부 등 부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용산기지이전계획(YRP: Yongsan Relocation Plan)', 한강 이북의 동두천과 의정부 등에 있는 미2사단을 비롯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그리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2007년 11월 미군기지 이전 공사에 착수한 이후 2013년 8월에 학교 시설을 시작으로 이전대상 건물의 준공이 완료되는 대로 미군부대의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주한미군사령부·유엔군사령부·미2사단 본부 등 주요부대가 이전을 완료한 데 이어, 2019년에는 병원 등 지원부대들이 이전했으며, 2022년에는 작전센터·통신센터 등 주한미군 핵심지휘시설과 연합사령부 본부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평택미군기지는 기존의 캠프 험프리스를 포함해 1,467만 7,686㎡(444만여 평)로 여의도 면적의 5배이고, 해외에 주둔한 단일 미군기지 중 최대 규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지 내 도로길이는 64km, 지휘통신시설 케이블 67km, 하수관길이 25km, 전선길이 1,548km, 각종 회로시설길이가 806km에 이른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의 목적



평택 험프리스 미군기지

2. 미군기지 반환 및 환경 정화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함께 미군기지반환 및 환경정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국방부는 용산기지를 비롯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정화를 위해 한미 공조를 강화하고,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69개의 미군기지가 반환되었으며, 용산기지를 포함한 11개의 미군기지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절차에 따라 반환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반환된 기지를 깨끗한 상태로 국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환경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환경정화사업에 착수한 31개 기지 중 18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에 대한 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로 반환기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캠프마켓에서 발견된 다이옥신 토양 오염을 국내 최초로 정화하는 등 국내 토양환경 개선을 선도하고 있다. 캠프마켓 지역의 다이옥신 정화는 ‘국무조정실 집중관리 갈등과제’와 ‘국방부 갈등관리과제’로 선정되어 관리 중인 사업으로 다양한 사회적 갈등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화사업을 진행하였다.



다이옥신 정화



3. 기지이전의 효과

2022년은 연합사 본부를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 완료하여 전 시설물에 대한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연합사령관 주관으로 평택기지 이전행사를 실시하는 등 주한미군 기지이전을 완료하는 매우 중요한 해였다.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에 따른 국가 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은 서울 등 도심 지역 반환부지 공원화 및 용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반환부지 활용을 통한 지역개발은 물론, 범정부 차원에서 평택지역 개

발에 수조 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국내 건설업체의 공사 참여여건 보장 및 국산 건설자재 사용확대 등을 통한 국내 건설경기 부양에 기여하고 있다. 2014년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으로 인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16조 7,000억 원, 고용유발 효과는 약 1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평택기지 운영에 따른 지역 소비도 연간 약 5,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에 근거하여 평택 주민들을 위해 도로 개설, 상하수도 설비, 마을회관 건립 등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하였다. 이전사업의 효과는 수치 이상의 가치가 있다.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해 전력을 향상시키고, 미군기지를 반환받음으로써 전국을 균형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숫자로 환산하기 힘든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미군기지를 효율적으로 통합함으로써 얻어지는 한미동맹 강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향후 국방부는 연합사령부 본부 이전을 핵심으로 용산공원 조성 여건을 마련하는 등 용산기지이전계획과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의 경제적 효과

4. '연합사 평택시대'의 개막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이전

한미 양국은 2019년 6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 본부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후 조속히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2년 10월, 마침내 연합사가 평택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본격적인 '연합사 평택시대'가 막을 열었다.

연합사는 지난 1978년 창설된 이래 44년간 용산기지에 주둔해 오면서 한미동맹의 상징으로서 역할해 왔다. 동시에, 세계 유일의 단일 연합사령부로서 북한의 침략 위협과 도발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 평택 이전을 통해 44년간의 '연합사 용산시대'를 마감한 연합사는 새로운 동맹의 요람이 될 평택에서 향후 전작권 전환 이후 더욱 강력한 연합방위능력을 갖춘 한국군 주도의 미래 연합사를 약속하게 되었다.



연합사령부 이전행사 (2022년 11월)

연합사 이전의 기대효과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과 평택으로 나뉘어 근무해 온 연합사 요원들이 한 곳에서 어깨를 맞대고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연합사-주한미군사-유엔사 등 연합방위체계를 구성하는 주요 부대들이 서로 인접하게 됨으로써 작전적 효율성을 더욱 증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층 더 강력한 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또한, 연합사 평택 이전을 통해 한미 양국의 동맹정신이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동안 한미 장병들 간의 인적 상호운용성을 배양하는 터전이 되어온 연합사는, 평택 이전을 통해 장병들이 더욱 가까이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연합사를 통해 성장한 장병들은 미래 한미 군사관계 발전에 기여할 인재가 될 것이며, 향후 '평택 연합사'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합사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향후 동맹현안 공조에 모범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연합사에 근무 중인 주한미군 장병들은 더욱 안정적인 여건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에게는 용산기지 반환과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여건이 마련되었다. 이번 연합사 이전은 한미 공조를 통해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한 성공 사례로서, 향후 동맹현안들의 추진과 잔여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소중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1. 방위산업 수출 증진

방산수출 확대 실적

2022년 스톡홀름 국제평화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2021년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이고 전 세계 무기수출량의 2.8%를 차지하여 2012~2016년의 수출량 1.0%와 비교시 세계시장 점유율이 177% 가량 증가하였다.

세계 주요 무기수출국 현황

* 출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2022 세계 방산시장 연감」

순위	수출국	점유율(%)		
		2017년~2021년	2012년~2016년	증감률(%)
1	미국	39.0	32.0	14
2	러시아	19.0	24.0	-26
3	프랑스	11.0	6.4	59
4	중국	4.6	6.4	-31
5	독일	4.5	5.4	-19
6	이탈리아	3.1	2.5	16
7	영국	2.9	4.7	-41
8	한국	2.8	1.0	177
9	스페인	2.5	2.2	10
10	이스라엘	2.4	2.5	-5.6
11	네덜란드	1.9	2.0	-12
12	튀르키예	0.9	0.7	31
13	스웨덴	0.8	1.2	-35
14	우크라이나	0.7	2.5	-72
15	스위스	0.7	1.0	-35

2022년에는 M-SAM II(2022년 1월, UAE), K9 자주포(2022년 2월, 이집트/2022년 8월, 폴란드), 원양경비함(2022년 6월, 필리핀), K2 전차(2022년 8월, 폴란드), FA-50(2022년 9월, 폴란드), 천무(2022년 11월, 폴란드) 등 대규모 수주계약이 연달아 체결되며 방산수출 역사상 최대규모인 173억불의 방산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폴란드와의 대규모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방산수출 대상 권역이 중동·아시아 위주에서 유럽지역까지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 국가들과 대형 수출사업을 논의하고 있어 앞으로 방산수출은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며 국민경제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품목의 다양화

1970년대 태동한 국내 방위산업은 수류탄, 박격포와 같은 기본적인 무기의 국산화로부터 시작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미미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한 끝에 육·해·공군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첨단 유도무기를 우리 손으로 개발하고 생산하여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아래 표와 같이 2017년 이후 K-9 자주포와 T-50 항공기 등 기존 주요 수출품목과 더불어, 해성 미사일 및 청상어 어뢰 등 고부가가치 유도무기까지 수출품목이 다양해졌다. 이는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국제 신뢰도가 높아져 'Made in Korea'라는 브랜드 가치가 향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 무기체계는 세계 수준의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어 성능이 우수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여 다수 국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2022년 주요 수출품목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주요 수출품목	K-9 자주포 T-50	K-9 자주포 청상어 어뢰 T-50 KT-1B	K-9 자주포 잠수함 해성 미사일	K-9 자주포	K-9 자주포 T-50 초계함	MSAM II K-9 자주포 원양경비함 K2 전차 FA-50 천무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확대

정부 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는 상대국가와 방산협력의 근간이 되는 문서로, 2016년 33개국 38건에서 2022년 47개국 57건으로 크게 증가하여 호혜적 방산협력의 기반을 확대하였다.

연도별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 체결 현황

년도	건수	국가(신규 개정 체결)	년도	건수	국가(신규 개정 체결)
1988	1	미국	2009	2	이집트, 필리핀
1991	1	태국	2010	5	에콰도르, 우즈베키스탄, 페루, UAE, 노르웨이
1992	2	스페인, 프랑스	2011	2	인도네시아, 덴마크
1993	1	영국	2012	1	태국
1994	1	필리핀	2014	1	폴란드
1995	3	이스라엘, 인도네시아(2건)	2015	2	칠레, 체코
1996	1	캐나다	2016	2	핀란드, 헝가리
1997	3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2017	6	보츠와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사우디아라비아, 카자흐스탄, 미국
1999	3	네덜란드, 터키, 베네수엘라	2018	1	UAE
2001	2	베트남, 호주	2019	5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스웨덴, 사우디아라비아, 파라과이
2004	1	방글라데시	2020	1	에티오피아
2005	1	인도	2021	2	요르단, 바레인
2006	2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2022	4	UAE, 이집트, 그리스, 케냐
2008	1	콜롬비아			
총계				47개국	57건

범부처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상대국의 다변화된 방산협력 요구에 대해 외교·안보·산업분야 등 관계 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2020년 2월 제정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였으며, 국방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2021~2022년 3회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방위산업 진흥 및 방산수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협의·조정하고, 범정부 역량을 활용한 산업협력, 금융지원 등 패키지 딜 형태의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실효적 협의체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2년 11월에는 대통령 주관으로 '방산수출 전략회의'를 개최하여 방산수출 확대를 가속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의지를 천명하였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은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 병행하여 국가별로 핵심 수출사업에 대한 업체의 수주 지원을 위해 육·해·공군, KODITS¹⁾, 수출입은행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일괄 지원팀'을 운영하고 있다. 일괄 지원팀에서의 국방부와 각 군의 기능은 수출대상국의 국방부와 협력 증대, 수출대상장비의 운영시범을 통한 장비 우수성 홍보, 구매국의 장비운용을 위한 후속 군수지원 등 방산수출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KOTRA, 수출입은행 등과 산업협력 패키지 발굴과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방부·방위사업청을 비롯한 정부는 글로벌 방위산업 강국으로의 도약과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범정부 방산수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2. 군사과학 무기·기술 개발 사례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KF-21은 21세기 한반도 영공을 수호할 최초의 국산 전투기로, 현재 운용중인 F-4, F-5 전투기 도태에 따른 대체 전력이자 공군의 기반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다. 전투기 개발은 대규모의 예산과 시간 투자가 필요한 국가적인 사업이며, KF-21 전투기 사업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하여 다양한 첨단기술 구현 등을 위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다. 진화적 개발전략을 적용하여 Block-I과 Block-II 등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최초양산된 전투기의 전력화 시기는 Block-I 개발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후속양산된 전투기의 전력화는 Block-II 개발이 종료되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이루어질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1년 3월 국산 전투기 개발계획을 공표한 이후 2002년 11월 장기신규소요로 결정되면서 시작되었다. 사업추진 초기에는 천문학적인 개발비용에 따른 경제성과 독자개발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200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사업타당성 조사만 7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1) Korea Defense Industry Trade Support Center :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그러나, 관계관들의 심도깊은 검토와 논의 끝에 2010년 제41차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 심의·승인을 통해 획득방안(국내 연구개발)과 개발주관기관(국과연 주관 탐색개발, 업체 주관 체계개발)을 결정하였고, 2011년~2012년 탐색개발을 실시하여 KF-21의 체계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014년 KF-21의 개발 총사업비가 확정되었고 2015년 체계개발 주관업체로 한국항공(KAI)이 선정되었다.

2016년 1월 사업착수회의를 시작으로 '최초의 국산 전투기 개발'이라는 대장정에 올랐고 2019년 KF-21 시제기 제작에 돌입하여 사업착수 5년만인 2021년 4월 9일에 KF-21 시제 1호기의 출고행사를 진행하였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일에 맞춰 그동안 KF-X로 불렸던 시제기의 고유명칭을 KF-21로, 통상명칭을 보라매로 공표하였다. 통상명칭은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매에서 유래되었다. 2022년 7월 시제 1호기 최초비행을 시작으로 2023년 1월 첫 초음속 비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체계개발이 진행 중이다.



시제기(2021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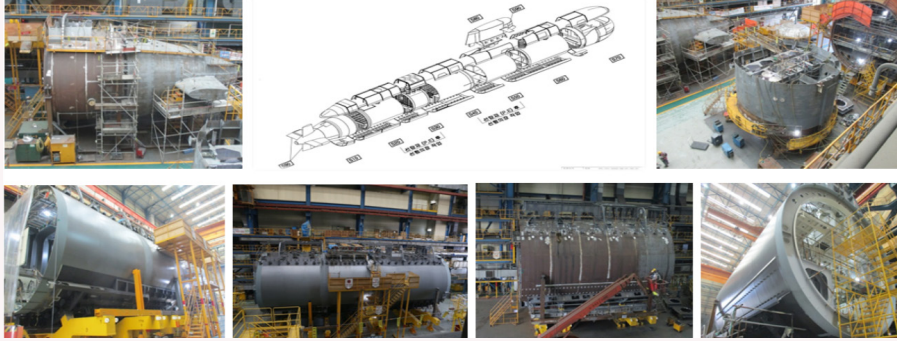
KF-21 최초비행(2022년 7월)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크기가 F-15보다 작지만 F-16보다는 크며, 단좌형상과 복좌형상을 모두 개발하고 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은 미국 GE(General Electric)사의 F414 엔진으로 22,000파운드의 추력을 낼 수 있고, 미국의 전투기에도 동일엔진이 장착되는 등 성능이 검증된 모델이다. KF-21의 국내개발은 전투기 핵심 부품 산업분야의 기반을 확충하고, 독자개발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민수분야의 국제협력 가능성을 증대시켰으며, 세계 군용기 시장에서 우리 전투기의 수출경쟁력이 제고되어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인하 및 군수지원 적시성 확보 등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 대한 기술 의존율을 낮추고, 전투기 생산분야와 연관된 반도체, 자동차, IT 기술 등의 산업도 동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3000톤급 국산 잠수함, '도산안창호함'

우리 해군은 1987년부터 독일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장보고-Ⅰ 및 장보고-Ⅱ 잠수함을 건조하여 운용해 왔다. 그러나 독일산 장비를 장착한 장보고-Ⅰ/Ⅱ급 잠수함은 장비 고장 발생 시 외국의 정비기술지원을 받거나 수리를 위해 독일 제작사까지 보내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잠수함의 은밀성과 타격능력을 현저히 높이기 위해 2007년 3,000톤급 국산 잠수함인 장보고-Ⅲ 사업을 착수하였다.

해군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독일 잠수함 도입과정에서 확보한 잠수함 설계 및 건조기술, 수십년간의 잠수함 운용경험,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서울대 등 연구소·대학의 보유기술 등의 모든 역량을 집결시켰다. 그리고 잠수함을 건조하는 대우조선해양과 수십 개의 탑재장비 개발업체들도 높은 수준의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진 하였다. 2014년부터 건조된 최초의 3,000톤급 국산 중형잠수함은 독립운동과 민족번영에 이바지한 도산안창호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도산안창호함'으로 명명되었고, 합참과 해군 주관으로 수행된 약 3년간의 엄격한 시험평가를 마친 후 2021년 8월 마침내 해군에 인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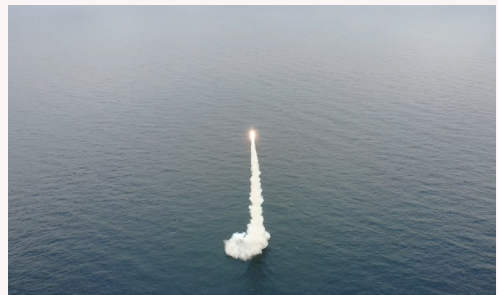


장보고-III급 선도함(도산안창호함) 섹션별 건조 과정

도산안창호함은 기뢰, 어뢰, 유도탄 등 다양한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통해 지상핵심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하며, 기존 잠수함보다 소나체계²⁾의 탐지능력과 전투체계의 표적처리 능력 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다. 또한, 은밀성 측면에서 수소기술을 활용한 국산 연료전지를 탑재하여 수중에서 장기간 항해가 가능하고, 다양한 소음 저감 기술이 적용되어 세계 최정상급 성능의 디젤-전기추진 잠수함이라 할 수 있다.



도산안창호함의 부상 항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2) 잠수함에 탑재하여 수상 및 수중 표적을 탐지·추적·식별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

도산안창호함의 국산화율은 기존의 잠수함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증가한 76%에 이른다. 전투-소나체계 및 추진체계 등 핵심장비의 국산화를 통해 외국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적시적인 정비지원과 부품단종 등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함정의 가동률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잠수함을 수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수출통제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경쟁력 향상과 국내 일자리 창출 및 내수경제 진작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잠수함을 도입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인 도산안창호함을 성공적으로 건조하는 쾌거를 달성하였다. 앞으로 장보고-III 잠수함은 전략적 억제 및 해상교통로 보호 등의 임무에 투입되어, 해양에서의 국익 수호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나아가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장보고-III 잠수함을 통해 해양강국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

대한민국 두 번째 대형수송함, '마라도함'

상륙작전은 적이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 해상-공중 전력을 투사함으로써 우군에게 유리한 전쟁환경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육-해-공 합동기동작전이다. 한국전쟁을 비롯한 많은 전쟁에서 상륙작전이 전세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상륙작전의 유용성은 이미 입증되었다. 또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에서 지역분쟁 빈발 및 대규모 재난 발생 등으로 인해 해외 평화유지 활동과 재난대응 국제협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해상 작전 지속능력이 우수하고 다목적 임무수행이 가능한 대형수송함(LPX : Landing Platform eXperimental)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마라도함은 1만 4,500톤급 대형수송함으로, 길이 199m, 폭 31m이고 최대속력이 시속 23노트이며, 승조원과 상륙군 등 병력 1,000여명, 헬기 11대, 전차 6대, 고속상륙정 2척 등을 동시 탑재할 수 있다. 함명은 한반도 남방 해역과 해상교통로 수호 의지를 담아 대한민국 최남단 섬인 '마라도함'으로 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99년 대형수송함 사업에 착수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인 설계와 건조과정을 거쳐 약 7년만인 2005년 7월 12일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첫 번째 대형수송함인 독도함을 처음으로 바다에 진수하였고, 시험평가 과정을 거쳐 2008년부터 해군이 인수-운영하고 있다. 독도함에 이은 두 번째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은 2014년 12월 건조를 시작하여 약 7년만인 2021년 6월 해군에 인도되었다.



마라도함의 항해

첫 번째 대형수송함인 독도함 건조시 해외에서 도입하였던 탐색레이더, 적외선탐지장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체계를 국내개발하여 마라도함에 탑재함으로써 정비가 용이해지고 유지비용이 절감되었다. 그리고 독도함보다 성능이 향상된 전투체계와 최신 4면 고정형 레이더(AESA)를 탑재함으로써 지휘통제함 임무수행 능력과 함정 생존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또한, 비행갑판을 강화하여 회전익 항공기(MV-22)의 운용이 용이해졌으며, 현측 램프³⁾ 보강을 통해 해병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장비를 원활하게 탑재할 수 있는 등 상륙작전 수행능력이 향상되었다.

3) 현측 램프는 전차 등 탑재 차량과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측면 출입구를 의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형수송함 독도함과 마라도함은 우리 군의 대규모 상륙작전 능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대규모 재해·재난 시 구조작전 지휘와 유사시 재외국민 철수 등 비군사적·초국가적 안보위협에 대비하여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대한민국 대표함정으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 'K9 자주포'

북한은 한국전쟁기를 포함해 휴전 이후에도 북한이 보유한 다양한 야포, 방사포를 이용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해 왔다. 우리 군은 이러한 북한의 포병위협을 질적으로 압도하고 자주국방을 굳건히 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K9 자주포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 개발 난이도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1999년부터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해 현재 1,100여문 이상 배치가 완료된 상태이다. 자동화된 사격통제장치와 장전장치 등을 장착한 K9 자주포는 방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미국 등 타 국가의 자주포와 비교해서도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



K9 자주포 사격 훈련

우리 군은 화력의 질적 우세를 달성하고 뛰어난 기술 수준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K9 자주포 1차 성능개량(K9A1)을 거쳐 2022년부터 2차 성능개량(K9A2)을 추진하고 있다. 탄두와 장약을 자동으로 장전하고 발사속도를 30% 이상 향상시키는 등 성능을 개선하고, 운영에 필요한 승무원 수를 줄여 더 적은 인원으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무기체계의 품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성능개량을 누적시켜 장기적으로는 우리 군이 목표로 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운용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무인화 기술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다. 현재 8개 국가에 1,000여 문 이상이 수출되며 우수함을 입증하고 있는 K9 자주포의 수출경쟁력도 계속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변국 군사력 현황

총괄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총 병력	1,395,350	900,000	2,035,000	247,150
육군	489,050	280,000	965,000	150,700
해군	349,600	150,000	260,000	45,300
공군	329,400	165,000	395,000	46,950
기타	해병대 179,250 우주군 6,400 해안경비 41,650	공수 45,000 전략로켓군 50,000 지휘/지원 180,000 철도군 29,000 특수군 1,000	전략로켓군 120,000 전략지원군 145,000 기타 150,000	통막 4,200

육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사 단	10(여단 57)	11(여단 103)	집단군 13	9(여단 6)
전차 (대)	MBT 6,095	MBT 13,127	MBT 6,400 LT TK 750	MBT 579
보병전투차량(대)	IFV 4,931	IFV 13,680	IFV 7,200	IFV 68
장갑차(대)	APC 18,607	APC 12,050 RECCE 2,700	APC 4,350	APC 804
	ASLT 100		ASLT 1,000	ASLT 123
	RECCE 2,545		AAV 900	AAV 52
	AUV 19,516			RECCE 111
견인포(문)	1,339	12,565	1,234	229
자주포(문)	1,539	6,228	2,910	166
다련장포(문)	588	4,276	1,640	54
박격포(문)	2,507	4,310	2,800	1,113
대전차 유도무기(기)	SP 1,133	GUN 2,526	SP 1,100	SP 37
			RCL 3,966	
			GUN 1,788	
지대공미사일(기)	1,187	1,520	614	311
헬기(대)	3,812		906	348
고정익 항공기(대)	218		6	15

해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술잠수함(척)	53	38	53	22	
전략핵잠수함(척)	14	11	6	-	
항공모함(척)	11	1	2	-	
순양함(척)	24	4	3	4	
구축함(척)	68	11	36	39	
호위함(척)	21	16	45	6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86	129	196	6	
소해함(척)	8	42	57	22	
상륙지휘함·상륙함(척)	33	21	58	3	
상륙정(척)	143	28	60	8	
지원함(척)	13	278	157	24	
고정익 항공기(대)	954	219	446	73	
헬기(대)	707	127	109	120	
해병사단(개)	해병원정군 3	1(여단 13)	여단 7		
전차(대)	215	330	80		
보병전투차량(대)	488	1,100	10		
상륙돌격장갑차(대)	1,254	-	290		
병력수송장갑차(대)	207	400	150		
해병전력	다목적장갑차(대)	6,129	-	-	
	야포(문)	1,459	405	40	
	대전차미사일차량(대)	106	60	-	
	UAV·ISR(대)	180	-	-	
	전투기(대)	366	-	-	
	틸트로터 수송기(대)	309	-	-	
	헬기(대)	422	-	5	

공군

구분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전략폭격기(대)	BBR 123	BBR 137	BBR 176	-
정찰기(대)	ISR 38	ISR 58	ISR 52	-
지휘기(대)	C2 4	C2 8	C2 5	-
전투기(대)	FTR·FGA·ATK 1,451	FTR·FGA·ATK 876	FTR·FGA·ATK 1,629	FTR·FGA 317
수송기(대)	TPT 333	TPT 448	TPT 247	TPT 54
급유기(대)	TKR 156 TKR/TPT 82	TKR 15	TKR 13 TKR/TPT 3	TKR/TPT 7
조기경보기(대)	AWE&C 31	AWE&C 9	AWE&C 19	AWE&C 18
훈련기(대)	TRG 1,126	TRG 262	TRG 1,012	TRG 246
헬기(대)	CSAR 82 TPT 62	ATK 399 EW 20 TPT 333 TRG 69	MRH 22 TPT 31	SAR 39 TPT 15
민간예비(대)	국제/국내선 민항기 553	-	-	-
전자전·정보기(대)	ELINT·EW 35	ELINT·EW 34	ELINT·EW 25	SIGINT·EW 7

*출처: 『The Military Balance 2022』 (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년 2월)

세계 주요 국가의 국방예산 현황

2021년 기준

국가	국방예산 (억 달러)	국민 1인당 국방비(달러)	GDP 대비 국방비(%)	병력(천 명)
대한민국	437	844	2.55	530
미국	7,540	2,251	3.29	1,395
일본	493	395	0.97	247
중국	2,073	148	1.23	2,035
러시아	458	322	2.78	900
대만	162	688	2.06	169
영국	716	1,084	2.30	153
프랑스	593	872	2.02	203
독일	561	701	1.33	183
이스라엘	203	2,310	5.05	170
이집트	48	45	1.55	439
사우디아라비아	467	1,342	5.54	257
호주	343	1,329	2.13	60
터키	102	123	1.28	355
말레이시아	39	116	1.05	113
태국	73	105	1.33	361
싱가포르	116	1,972	3.05	51
캐나다	232	612	1.15	67

*출처 : 『The Military Balance 2022』(국제전략문제연구소, 2022. 2월), 대한민국은 정부통계 기준

연도별 국방예산 현황

연도	국방비(억원)		GDP대비 국방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국방비 증가율(%)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본예산	추경예산
1991	74,524	74,764	3.07	3.08	27.4	23.8	12.3	12.6
1992	84,100	84,100	3.03	3.03	25.1	25.1	12.8	12.5
1993	92,154	92,154	2.92	2.92	24.2	24.2	9.6	9.6
1994	100,753	100,753	2.70	2.70	23.3	23.3	9.3	9.3
1995	110,744	110,744	2.53	2.53	21.3	21.3	9.9	9.9
1996	122,434	122,434	2.49	2.49	21.1	20.8	10.6	10.6
1997	137,865	137,865	2.54	2.54	20.4	20.7	12.6	12.6
1998	146,275	138,000	2.72	2.57	20.8	18.3	6.1	0.1
1999	137,490	137,490	2.32	2.32	17.2	16.4	△6.0	△0.4
2000	144,390	144,774	2.22	2.22	16.7	16.3	5.0	5.3
2001	153,884	153,884	2.18	2.18	16.3	15.5	6.6	6.3
2002	163,640	163,640	2.09	2.09	15.5	14.9	6.3	6.3
2003	174,264	175,148	2.08	2.09	15.6	14.8	6.5	7.0
2004	189,412	189,412	2.09	2.09	16.0	15.8	8.7	8.1
2005	208,226	211,026	2.17	2.20	15.5	15.6	9.9	11.4
2006	225,129	225,129	2.24	2.24	15.5	15.3	8.1	6.7
2007	244,972	244,972	2.25	2.25	15.7	15.7	8.8	8.8
2008	266,490	266,490	2.31	2.31	15.2	14.8	8.8	8.8
2009	285,326	289,803	2.37	2.40	14.5	14.2	7.1	8.7
2010	295,627	295,627	2.24	2.24	14.7	14.7	3.6	2.0
2011	314,031	314,031	2.26	2.26	15.0	15.0	6.2	6.2
2012	329,576	329,576	2.29	2.29	14.8	14.8	5.0	5.0
2013	343,453	344,970	2.29	2.30	14.5	14.3	4.2	4.7
2014	357,056	357,056	2.28	2.28	14.4	14.4	4.0	3.5
2015	374,560	375,550	2.26	2.27	14.5	14.3	4.9	5.2
2016	387,995	388,421	2.23	2.23	14.5	13.9	3.6	3.4
2017	403,347	403,347	2.20	2.20	14.7	14.2	4.0	3.8
2018	431,581	431,581	2.27	2.27	14.3	14.2	7.0	7.0
2019	466,971	466,971	2.43	2.43	14.1	14.0	8.2	8.2
2020	501,527	483,782	2.58	2.49	14.1	12.4	7.4	3.6
2021	528,401	522,771	2.55	2.52	13.9	12.3	5.4	8.1
2022	546,112	531,043	2.53	2.46	13.0	10.7	3.4	1.6
2023	570,143	-	2.54	-	12.8	-	4.4	-

*GDP: 한국은행 국민계정 2015년 기준(2022년, 2023년은 기획재정부 예상치, 기재부 경제정책방향, 2022.12.)

*정부재정 및 국방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정부예산 및 국방예산 증가율 추이」는 본문 254쪽 참조

남북 군사력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한국	북한		
병력(평시)	육군	36.5만여명	110만여명		
	해군	7만여명 (해병대 2.9만여명 포함)	6만여명		
	공군	6.5만여명	11만여명		
	전략군	-	1만여명		
	계	50만여명	128만여명		
주요전력	부대	군단(급)	(해병대 포함) 12	15	
		사단	(해병대 포함) 36	84	
		여단(독립여단)	(해병대 포함) 32	117	
	육군	전차	(해병대 포함) 2,200여대	4,300여대	
		장갑차	(해병대 포함) 3,100여대	2,600여대	
	장비	야포	(해병대 포함) 5,600여문	8,800여문	
		다련장 / 방사포	310여문	5,500여문	
		지대지 유도무기	발사대 60여기 (전략군)	발사대 100여기	
	해군	수상함정	전투함정	90여척	420여척
			상륙함정	10여척	250여척
기뢰전함정(소해정)			10여척	20여척	
잠수함정		지원함정	20여척	40여척	
		잠수함정	10여척	70여척	
공군	전투임무기	410여대	810여대		
	감시통제기	(해군 항공기 포함) 70여대 (정찰기)	30여대		
	공중기동기(AN-2포함)	50여대	350여대		
	훈련기	190여대	80여대		
헬기(육해공군)		700여대	290여대		
예비병력		310만여명 (사관후보생, 전시기로소집, 전환/대체 복무 인원 등 포함)	762만여명 (교도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포함)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타군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

* 남북 군사력 현황은 양적 비교만 제시하였음. 군사력을 실질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양적 비교뿐만 아니라 장비성능 및 노후도, 훈련수준, 합동전력 운용개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육군 여단 비교의 경우 군단급 이상 제대에 편성된 독립여단인 포병, 공병, 항공여단 등을 포함하여 비교한 것임.

* 북한 특수작전군 병력은 육군·해군·공군 등에 포함되어 있음

남북 경제지표 현황

구분	한국		북한		한국/북한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2019년	2020년
명목GNI(조원)	1,941.1	1,948	35.6	35	54.5배	55.6배
1인당GNI(만원)	3,753.9	3,762.1	140.8	137.9	26.6배	27.2배
경제성장률(%)	2.0	-0.9	0.4	-4.5	5배	-
무역총액(억달러)	10,455.8	9,801.3	32.4	8.6	322.7배	1139.6배
총인구(천명)	51,765	51,836	25,250	25,368	2배	2배

* 출처 : 2021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 1993년부터 유엔(UN),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에서 GNP 대신 사용 (GNI는GNP)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현황

구분	배경	주요 내용(요약)
1695호 (2006.7.15.)	장거리미사일 발사 (2006.7.5.)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 관련 물자, 기술, 금융자원 이전을 방지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
1718호 (2006.10.14.)	1차 핵실험 (2006.10.9.)	· 금수조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산하에 북한제재위원회 설치
1874호 (2009.6.12.)	2차 핵실험 (2009.5.25.)	· 소형무기 수입을 제외한 전면 무기 금수 · 대량살상무기(WMD)·미사일 활동에 기여 가능한 금융거래 금지 · 북한제재위원회 지원을 위한 전문가 패널 설치
2087호 (2013.1.22.)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2.12.12.)	·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2094호 (2013.3.7.)	3차 핵실험 (2013.2.12.)	· 핵·미사일 관련 금수 품목 확대 · 금융제재 강화(결의 위반 은행의 해외 신규 활동 금지 등)
2270호 (2016.3.2.)	4차 핵실험 (2016.1.6.) /장거리미사일 발사 (2016.2.7.)	· 북한과의 군경 협력 금지 · 북한 행발 화물 검색 의무화, 제재 대상 선박 또는 불법 활동 연루 의심 선박 입항 금지 · 북한 은행의 해외 지점·사무소의 90일 내 폐쇄 · 북한산 광물(석탄, 철, 금 등) 수입 금지 조치 도입
2321호 (2016.11.30.)	5차 핵실험 (2016.9.9.)	· 북한과의 과학기술협력 금지 · 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북한 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의무 명시 · 북한 내 외국 금융기관 전면 폐쇄 · 수출금지 광물(은, 동, 아연, 니켈) 추가 및 소형물 수출 금지 · 북한산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2356호 (2017.6.2.)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17.5.14.)	· 제재 대상 지정 확대
2371호 (2017.8.5.)	탄도미사일 발사 (2017.7.4., 7.28.)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북한제재위원회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및 회원국의 동 선박 입항 불허 의무 ·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 북한 석탄, 철, 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2375호 (2017.9.11.)	6차 핵실험 (2017.9.3.)	· 대량살상무기(WMD) 및 재래식무기 이중용도 통제 품목 추가 · 기국 동의하 금지품목 의심 선박에 대한 검색 촉구 ·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 대북 유류 공급 제한 *정유제품 연간 200만 배럴 상한, 원유 현 수준 동결 ·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2397호 (2017.12.22.)	화성-15형 발사 (2017.11.29.)	· 영토 및 영해에서 금수품 운송 또는 금지활동 연루 의심 선박 대상 나포, 검색, 억류 · 북한 해외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 대북 유류 공급 추가 제한 *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 북한의 식료품,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광물 및 토석류, 목재류, 선박 수출 금지 · 대북 산업용 기계류, 운송수단, 철강 및 여타 금속류 수출 금지 · 조업권 거래 금지 명확화

북핵문제 관련 주요 비핵화 합의

합의	주요 내용(요약)
① 제네바 기본합의 (1994. 10.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연감속로를 경수로로 대체하기 위한 협력 · 마·북 간 정치·경제 관계의 완전 정상화 지향 · 비핵화된 한반도의 평화·안보를 위한 협력 · 핵 비확산체제 강화를 위한 협력
② 9·19 공동성명 (2005.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재확인 · 에너지, 교역, 투자 분야에서의 경제협력 증진 약속 ·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에 약속 · 단계적 방식의 합의 이행 조치 합의
③ 2·13합의 (2007. 2.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내 핵시설의 폐쇄·봉인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복귀, 모든 핵프로그램 목록 작성 협의 · 마·북·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 ·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 직접적 관련 당사국간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
④ 10·3합의 (2007. 10.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모든 현존 핵시설 불능화 및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완료 · 북한은 핵 물질,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 재확인 ·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
⑤ 2·29합의 (2012. 2.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비핵화 사전조치 실행 · 미국, 24만 톤의 영양지원 제공 · 미국, 대북 적대이사 없음을 확인 · 마·북관계 개선 및 문화·교육·체육 등 민간교류 확대
⑥ 판문점선언 (2018. 4.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번영 및 자주통일 ·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 완전한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⑦ 마·북공동성명 (2018.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마·북관계 수립 · 한반도의 항구적·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 노력 · 북한의 판문점선언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노력 · 전쟁포로, 전쟁실종자의 유해수습 및 신원확인 유해송환
⑧ 평양공동선언 (2018. 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교류협력 증대 ·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 · 미측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북한의 핵개발 경과 및 평가

| 핵 기반시설 구축 | 북한은 6·25전쟁이 끝난 직후 전후복구와 동시에 원자력에 관한 기초연구, 인력 양성 등 핵에너지 활용을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1955년 김일성 종합대학 물리학부에 핵물리강좌를 개설하였고 1956년에는 국가과학원(구 과학원)에 핵물리실험실을 설치하였다. 특히 1956년 「북소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면서 구소련 드브나(Dubna) 핵연구소에 과학자들을 파견하여 선진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의 기초를 마련하였고, 1959년에는 중국과도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1963년 구소련의 도움을 받아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토대로 1965년부터 평북 영변에 대규모 핵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동시에 평산, 순천, 박천 등의 우리나라 광산개발과 채광된 우리나라를 정련하기 위한 시설 등도 건설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우리나라 자원을 바탕으로 핵시설들을 차례대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 핵 개발 본격화 | 북한은 1980년대 들어 무기급 생산시설 구비, 우수한 핵 전문인력 양성, 핵실험장 건설 등 핵무기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장하면서 본격적인 핵 개발에 착수하였다. 영변에 조성된 핵단지에 플루토늄 생산에 필요한 핵심시설인 원자로, 재처리시설, 핵연료 제조공장 등이 차례대로 완공되었다. 북한은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한 5MWe 흑연감속용 원자로를 1986년 완공하여 가동하였으며, 사용 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방사화학실험실을 1985년에 착공, 1989년부터 가동하였다. 이와 동시에 영변 핵단지 내 5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가 199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되었고, 태천에는 200MWe 흑연감속용 원자로 건설계획을 수립하였다.



영변에 위치한 5MWe 원자로

1989년 프랑스 상업위성에 의해 영변 핵단지가 노출되면서 북한의 비밀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1991년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 간 안전조치 협정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1992년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결과 북한의 핵활동 신고내역에 중대한 불일치가 발견되면서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더욱 논란이 되었다. 추가 확인을 요구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 요청은 북한의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으로 이어졌고 클린턴 행정부는 군사읍선까지 검토하였으나 1994년 미북간 「제네바 기본합의¹⁾」 타결로 북핵문제가 극적으로 봉합²⁾됨으로써 북한의 핵 활동은 이후 2002년까지 한동안 동결되었다.

1)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3차례 고위급회담을 통해 합의문을 채택 (1994.10.21.)

2) 북한의 핵개발 동결포기를 대가로 미국은 중유 제공, 경수로 2기 건설, 미북관계 정상화 등에 합의

그러나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에 파키스탄의 지원을 받아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우라늄 농축 추진에 대해 북한은 한동안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으나, 2010년 미국의 해커 박사를 초청하여 우라늄 농축시설을 대외에 전격 공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우려를 가중시켰다.

2002년 부시 행정부는 「제네바 기본합의」의 불안정성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활동 의혹을 제기하며 「제네바 기본합의」를 파기하고 북한에 대한 중수지원과 경수로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북한도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 사찰관 추방, 영변 핵시설의 동결 해제, 사용후핵연료봉의 재처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핵물질 생산을 전격적으로 재개하였다. 이후 북한은 2003년과 2005년 두차례에 걸친 재처리를 통해 상당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에 이어 2006년 10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최초의 지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당시 우리나라 기상청에 의해 탐지된 인공지진파의 강도는 약 3.9Mb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평가된 핵폭발 위력은 1kt 미만이었다. 이러한 핵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분석된 북한의 핵기술 수준은 실전에 운용하기에는 미흡하였으나 최소한의 핵폭발장치를 제조하고 폭발시킬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핵능력 고도화 | 북한은 1차 핵실험 이후 핵탄두의 위력 증대, 미사일 탑재, 대량생산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핵능력 고도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북한은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8년 말까지 영변 핵단지 내 주요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조치를 단행하며 핵물질 생산을 잠정 중단하였다. 그러나 검증 문제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6자회담이 더 이상 개최되지 못하면서 2009년에 북한은 불능화가 진행 중인 핵시설을 재가동하였고, 같은 해 5월에는 2차 핵실험까지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는 과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핵무기의 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실전에 사용하기에는 여전히 기술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12년 이후 북한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내세우면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한 행보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2013년 2월, 2016년 1월과 9월, 2017년 9월 등 4차례의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특히 6차 핵실험에서 보여준 핵폭발 위력은 약 50kt으로 이는 과거 핵실험에 비해 현저히 증대되어 수소탄 시험을 시행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한 핵실험 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일시	2006.10.9.(월) 10:36	2009.5.25.(월) 09:54	2013.2.12.(화) 11:57	2016.1.6.(수) 10:30	2016.9.9.(금) 09:30	2017.9.3.(일) 12:29
규모(Mb)	3.9	4.5	4.9	4.8	5.0	5.7
위력(kT)	약 0.8	약 3~4	약 6~7	약 6	약 10	약 50

수차례 핵실험 직후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핵탄두의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 달성'을 주장³⁾하였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 의사 등을 표명하였다.

북한은 2018년 4월 당 중앙위원회에서 '병진노선 승리'와 '핵무기 병기화 검증 완료'를 주장하며 추가 핵실험·ICBM 시험발사 중단과 핵실험장 폐기를 전격 선언하였고 2018년 5월 24일에는 내외신 기자를 초청한 가운데 풍계리 핵실험장 강도와 지원시설을 폭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2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2021년 초부터 영변 핵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과 관련된 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물질 생산을 재개하였다. 또한, 2022년 초부터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북한이 주장하는 표준화규격화소형화경량화다중화의 의미(2013.5.21. 노동신문 / 2016.9.9. 핵무기연구소 성명)

- 표준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를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
- 규격화 : 대량생산이 가능하도록 핵탄두와 그 부품을 규격화하는 것을 의미
- 소형화 : 핵탄두의 폭발력이 15kt 이하인 무기를 만드는 것을 의미
- 경량화 : 미사일 탑재를 위하여 핵탄두의 총체적 질량을 가볍게 만드는 것을 의미
- 다중화 : 해당 군사적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가지 종류의 핵무기를 만드는 것으로 핵반응 방식에 따라 원자수소·중성자탄, 파괴력·사거리에 따라 전략·전술·전역핵무기 등으로 구분 가능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현황

2021년 이후

일자	주요내용
2021. 3. 25.	함남 함주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 9.15.	평남 양덕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 9.28.	자강 무평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발사
2021.10.19.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발사
2022. 1. 5.	자강도 일대에서 준중거리(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11.	자강도 일대에서 준중거리(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 탄도미사일발사
2022. 1.14.	평북 의주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17.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27.	함남 함흥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1.30.	자강 무평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2. 27.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 3. 5.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 3.16.	평양 순안에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2. 3.24.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022. 4.16.	함남 함흥에서 근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 4.	평양 순안에서 미상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 7.	함남 신포에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12.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5.25.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6. 5.	평양 순안·평남 개천·평북 동창리·함남 함흥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5.	평북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8.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 9.29.	평남 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1.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4.	자강 무평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6.	평양 삼석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 9.	강원 문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14.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0.28.	강원 통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2.	평북 정주·평북 피현·강원 원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 1발 NLL 이남 해상완충구역 내 탄착
2022.11. 3.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평남 개천, 황북 곡산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5.	평북 동림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 9.	평남 숙천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17.	강원 원산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1.18.	평양 순안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2022.12. 18.	평북 동창리에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북한은 정찰위성개발시험이라고 주장) 발사
2022.12. 23.	평양 순안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2022.12. 31.	황북 중화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남북 군사관계 일지

2020. 12. 1. ~ 2022. 12. 31.

북 측	일자	남 측
김여정 담화 발표 *외교부장관의 북한 비상방역조치 관련 의문 제기 에 비난	12.9.	
	12.15.	판문점 견학 잠정 중단 *코로나19 방역 강화
김정은 주관, 당 중앙위 제7기 제22차 정치국 회의 *8차 당대회 일정 공표, 집행부 구성안 등 토의	12.2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공포 *24조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 제25조 벌칙 등 신설
제8차 당대회(1.5.~12.)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발표 등	2021.1.5.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 당 중앙위 제8기1차 전원회의 *정치국 지도그룹 대폭 교체, 규율조사부·법무부 신설 등	1.10.	
	1.11.	대통령, '21년 신년사 *한미동맹 강화, 미북대화 및 남북대화에서 대전환 언급 합참, 언론의 열병식 동향 관련 보도에 답변 *한미정보당국은 북한 열병식 준비 동향 정밀추적 중
김여정 담화 발표 *합참의 '열병식 동향 정밀추적'발표 관련 비난	1.12.	
제8차 당대회(1.5.~12.) 기념 열병식 *당대회기념 열병식 최초 시행(전술유도무기, 북극성5형 최초공개)	1.14.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2.8.~11.) *부문별 경제목표 조정, 경제관리 개선 등 주문	2.8.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 *인민군대내 혁명적 도덕규율 확립 문제 토의	2.24.	
	3.1.	대통령, 3·1절 102주년 기념사 *남북관계 발전에서의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 3대 원칙 강조
	3.8.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3.8.~18.)
김여정 담화 발표 *한미연합지휘소훈련'(3.8.~18.)비난	3.16.	정부, 김여정 담화 관련 유감 표명 *김여정 담화에 강한 유감 표명, 남북미 대화 중요성 강조
	3.17.	한미 외교·국방 회담(3.17.~18.서울)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공유, 한미동맹 현안 논의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발표 *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 주장	3.18.	한미 외교·국방 공동성명 채택 *북핵문제는 시급한 사안, 양국간 긴밀한 공조 중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함경남도 함주일대)	3.25.	
	3.26.	대통령,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민들 우려 언급

북 측	일자	남 측
당 중앙위 비서(이병철)담화 발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는 주권국가 자위권 주장	3.27.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발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중기준 비난	3.28.	
김여정 담화 발표 *‘사해수호의 날’(3.26)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북의 신형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관련 언급에 대해 비난	3.30.	정부, 김여정 담화에 유감 표명 *서로를 향한 언행에 최소한의 예법 준수 강조
	4.1.	정부, DMZ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 재개
	4.30.	탈북민단체, DMZ일대에서 대북전단 살포 *2회(4.25.~29.) 대북전단 50만장과 소책자 500권 등 살포
김여정 담화 발표 *민간단체 대북전단살포를 도발이라고 주장 및 비난		정부, 외무성 담화 관련 입장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미북대화 재개 노력에 북한의 긍정적 호응을 기대한다는 점을 발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담화 발표 *북핵위협에 대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기조로 대처한다는 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비난	5.2.	
	5.3.	정부,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북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남북 정상 선언의 합의 당사자라는 점을 강조
	5.12.	제19차 한미동맹국방협력체 (KIDD) 회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
	5.21.	한미 정상회담 (미국 워싱턴 D.C.)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등 논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 비난 보도 (조중통)	5.31.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 (6.15.~18.) *김정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강조	6.17.	
김여정 담화 발표 *북의 대미입장에 대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흥미로운 신호’라는 발언에 반발, 비난	6.22.	
외무성 담화 발표 *미국과의 접촉 가능성 일축, 거부입장 표명	6.23.	
	6.24.	화살머리고지 우리 측 지역 유해발굴종료 (*19.4.1.~*21.6.24.)
남북 군통신선 복원 *‘20.6.9일 차단이후 414일 만에 복원	7.27.	정부, 남북 군통신선 전면 복원 발표 *오전 10시부 복원
김여정 담화 발표 *통신선 복원조치 발표, 연합연습시행 시행여부 예의주시	8.1.	
김여정 담화 발표 *한미연합연습 개시 비난, 엄중한 안보위협에 직면할 것 남북통신선(남북공동연락사무소·軍통신선)차단	8.10.	위기관리참모훈련(CMST) (8.10.~13.)

북 측	일자	남 측
당 중앙위 통일전선부장 담화 발표 *김여정 부부장 담화를 재강조, 한미연합연습 비난	8.11.	정부, 북 담화 관련 입장 표명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강조
	8.15.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남북공존’·‘한반도비핵화’·‘항구적 평화’ 강조
	8.16.	한미연합지휘소훈련 (CCPT, 8.16.~26.)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 *김정은주관, 당의 국토관리정책 철저히 관철, 방역대책 강화, 올해 농사결속 등 논의	9.2.	
	9.3.	DMZ내 백마고지 1단계 지역 유해발굴 (9.3~11.26) 개시
정권수립일 73주년 기념 민간·안전무력 열병식 *김정은 주관, 정주년 수준의 열병식 등 행사 진행	9.9.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안남도 양덕일대) 김여정 담화 발표 *대통령의 SLBM 시험발사 참관시 ‘북 도발’ 언급 관련 비난	9.15.	대통령, ‘한국 독자개발 SLBM 시험 발사’ 참관 *우리 미사일 전력은 북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
	9.21.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한반도의 불가역적 진전’과 ‘완전한 평화’를 위해 3자 또는 4자의 종전선언 제안
김여정 담화 발표 *종전선언은 긍정적 평가, 상호존중, 적대시 정책 및 이중기준 철폐를 선결조건으로 제시 외무성 부상 담화 발표 *종전선언은 시기상조 언급	9.24.	
김여정 담화 발표 *이중기준 철폐 재강조, 상호존중 유지될 때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정상회담 등의 관계개선 가능 언급	9.25.	
	9.27.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개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양자협력 증진 강조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자강도 무평리일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개최 (9.28.~29.)	9.28.	
김정은, 제14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남북관계 관련 이중기준·적대시 정책 철폐 강조,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선 복원 의사 표명	9.29.	
외무성 국제기구국장 담화 발표 *북 탄도미사일 발사관련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10.1) 개최 비난	10.3.	
남북 군통신선 복원 *8.10. 단절 후 55일 만에 복원	10.4.	
국방발전전략회의 ‘자위-2021’ 개최 (10.11.~22.) *김정은 기념연설, 한미의 ‘이중적 태도’ 지적, ‘주적은 전쟁이고, 한미가 아님’을 언급	10.16.	

북 측	일자	남 측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함경남도 신포일대)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SLBM) 시험발사	10.19.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관련 유감 표명
	10.25.	대통령, '22년 예산안' 시정연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 노력 강조
	10.27.	을지태극연습 (10.27.~29.)
	11.30.	판문점 견학 재개
	12.2.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한미동맹의 연합억제태세 강화, 북 위협의 효과적 억제·대응위한 新전략기획자침 하달
	12.7.	'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022.1.1.	대통령, '22년 신년사 *"남은 임기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탈북민 1명, 강원도 동부전선 월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자강도 무평리일대)	1.5.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자강도 화천일대)	1.11.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안북도 의주일대)	1.14.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1.17.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 *"전면 중지하기로한 활동의 재가동 문제 검토"	1.19.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함경남도 함흥일대)	1.27.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자강도 무평리일대)	1.30.	
신형 ICBM 1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2.27.	
신형 ICBM 1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3.5.	
	3.8.	서해 북 선박 (7명 탑승) NLL 월선, 나포 (백령도) *지역합동정보조사결과 대공협의점 없음
	3.9.	서해 북 선박·인원(7명) NLL선상 송환
김정은, 국가우주개발국 현지지도 *우주국방과학기술목표 달성을 위한 과학연구 및 개발 독려	3.10.	
김정은, 서해위성발사장 현지지도 *위성발사장 개건 현대화 목표 제시	3.11.	정부, '김정은 위성발사장 확장·개건 지시' 관련 입장 *"북은 긴장행위 중단, 대화 복귀" 강조
신형 ICBM 1발 발사 실패 추정 (평양시 순안일대)	3.16.	
ICBM 1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김정은 참관,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화성-17형) 시험발사	3.24.	
	4.1.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舊육군미사일사령부),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舊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 확대·개편
김여정, 당비서(박정천) 담화 발표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우리군이 선제 타격시 서울과 우리군을 괴멸시키겠다는 수사적 위협	4.3.	

북 측	일자	남 측
김여정 담화 발표 *국방부장관의 '선제타격' 발언 관련 비난, 핵무력 사용 가능성 시사	4.5.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함경남도 함흥일대) *김정은 참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	4.16.	
	4.18.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 (4.18.~28.)
'조선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 개최	4.25.	
신형 ICBM 1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5.4.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규탄 및 대화·외교 촉구
잠수함발사 탄도탄 1발 발사 (함경남도 신포일대)	5.7.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 *국가최중대비상사태' 발표,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발생 인정, 전국적 방역 봉쇄령 하달	5.12.	
김정은 주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협의회 *인민군 군의부문 투입 특별명령 하달	5.16.	
	5.21.	한미정상회담 개최 (서울) *핵·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확장역제 제공, 한미 연합훈련 확대, EDSCG 재가동 등 논의
신형 ICBM, 단거리 탄도 미사일 3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5.25.	정부,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엘리펀트 워크' 및 '한미 연합 지대지미사일' 사격 시행
다중 탄도미사일 8발 발사 (평양시 순안일대 등 4곳)	6.5.	
	6.6.	한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대응 *동해상 ATACMS 8발 발사
	6.11.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싱가포르)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 공감
김정은 주관,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1일차) *군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 논의(부위원장 직제, 각급 군사위원회 역할 제고 등)	6.21.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2일차) *전선부대 작전임무 추가 확정, 작전계획 수정, 군사조직 편제 개편 논의	6.22.	
당 중앙군사위 제8기 3차 확대회의 (3일차) *전쟁억제력확대 강화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논의	6.23.	
노동신문, 코로나 유행경로 분석결과 보도 *강원 금강군' 일대 색다른 물건 접촉후 발생, 전국적 확산됐다고 주장, 대북전단으로 유입 시사	7.1.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김정은, 남측이 선제타격시 정권·군대 전멸 등 위협적 수사	7.27.	

북측	일자	남측
	8.1.	김정은 발언 관련 국방부 입장 발표 한미일 '퍼시픽 드래곤' 연합훈련(8.1.~14.)
김정은 주관,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김여정, "코로나19 유입 남측 책임, 강력한 보복" 언급	8.10.	
외무성 국제기구 담당 부상 담화 발표 *‘COVID’는 일방적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주권침해행위,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동조하는 유엔사무총장 비난	8.14.	
	8.15.	대통령, 광복절 77주년 경축사 *대북 비핵화 로드맵 '담대한 구상' 호응 촉구
김여정 담화 발표 *‘담대한 구상’ 관련 비난	8.19.	
	8.22.	한미연합연습 (UFS, 8.22.~9.1.)
제14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9.7-8) *김정은 시정연설, 「핵무력정책」 법제화(9.8)	9.7.	
	9.13.	국방부, 북 「핵무력정책법」 관련 입장 발표 *“북, 핵사용 기도한다면 압도적 대응에 직면”
	9.16.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EDSCG)개최
국방성 장비종국 부총국장 담화 발표 *러시아와의 무기거래설' 부인 및 미국 비난	9.22.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평양북도 태천일대) *김정은 참관 제8기 제10차 당 정치국 회의	9.25.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9.26.	한미 연합해상훈련 (9.26.~29.)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양 순안일대) *김정은 참관	9.28.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양 순천일대) *김정은 참관	9.29.	미 부통령, DMZ 방문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강조 정부, 북 미사일 도발 규탄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양 순안일대) *김정은 참관	10.1.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자강도 무평리일대) *김정은 참관	10.4.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한반도와 국제평화 위협
	10.5.	한미, 북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지대지미사일’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양 삼석일대) *김정은 참관 전투기(8대)·폭격기(4대) 시위 비행	10.6.	합참, 전투기(30여대) 대응 출격
전투기 (150여 대) 무력시위	10.8.	공군, F-35A 대응출격

북 측	일자	남 측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강원 문천일대) *김정은 참관	10.9.	정부,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합참, 북 도발 강력 규탄, 즉각 중단 촉구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9.25~10.9) 보도 *김정은 주관,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에 대응 명분으로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 진행 주장	10.10.	
장거리 순항미사일 (평남온천일대 2발) 발사 보도 *김정은 현지지도, △핵전략무력운용공간 확대, △국가핵전투무력 무한대 △가속적 강화발전 강조	10.13.	한미연합 MLRS사격훈련 *MDL이남 5km 밖에 위치한 '담터사격장'에서 사격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평양 순안일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 해안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남측 전선지역에서의 포사격으로 도발적 행위 감행에 따른 대응조치 주장	10.14.	정부,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합참, 대북 경고입장 발표 국방부, 「9·19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 *개인 15명, 기관 16개소
	10.17.	'22년 호국훈련 (10.17.~28.)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18.	
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19.	국방부, 「9·19군사합의」 위반 관련 대북통지문 발송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거듭 확인
서해 해상완충구역내 방사포 10발 발사 *합참의 NLL침범 북 상선에 경고사격에 대한 대응 주장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0.24.	북 상선 1척, 서북방 북방한계선(NLL) 침범 *합참, NLL침범 북상선에 경고사격 및 퇴거 조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강원도 통천일대)	10.28.	
	10.31.	한미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개시
북·러 열차 재개 *코로나19로 2년 6개월여 만에 재개	11.1.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 (박정천) 담화 발표 *한미의 연합훈련 및 대응에 대한 비난 단거리 탄도미사일 7발 발사 (평안북도 용암진, 모봉리, 문천) *탄도미사일 중 1발이 NLL이남 해상완충수역내 낙탄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동해 해상완충구역에 100여 발 방사포 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1.2.	합참, 북 미사일 NLL이남 낙탄 관련 경고 및 대응 *작전본부장, 대북 경고,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F-15, KF-16 정밀 공대지미사일 3발 사격
당중앙 군사위 부위원장(박정천) 담화 발표 *「비질런트 스톰 연장」을 거론, 비난 신형 ICBM 1발 (평양 순안일대),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 (평남 개천일대) 발사 동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 *「9·19군사합의」 합의 위반	11.3.	정부, 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미국,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을 포함한 어떤 핵공격도 용납 불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 강조

북 측	일자	남 측
전투기 180여 대 동원하 공중 비행훈련 외무성 대변인 성명 *비질런트 스톰' 연합공중훈련을 당사 중지 경고	11.4.	합참,F-35A 등 80여 대 긴급 대응 '비질런트 스톰' 훈련 1일 연장 결정
단거리 탄도미사일 4발 발사 (평안북도 동림일대)	11.5.	'비질런트 스톰' 훈련 종료 (10.31~11.5.)
총참모부, '비질런트 스톰' 대응 군사작전 시행 발표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하여 11.2~5일간 미사일·방사포 발사, 500여대 대규모 비행훈련 등 진행 주장	11.7.	태극연습 (11.7.~10.)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으로만 진행되는 방어적 성격의 연례 지휘소 연습(CPX)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담화 발표 *미 백악관에서 제기한 '북러 무기거래설'부인	11.8.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평안남도 속천일대)	11.9.	합참,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11.10.	합참,「핵·WMD 대응본부」 신설
	11.13	한·미·일 정상회담,「프놈펜 선언」 발표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각 공조 재확인
외무상 담화 발표 *한미일 프놈펜 성명'비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 발사 (강원도 원산일대)	11.17.	한미 미사일 방어훈련
신형ICBM 1발 발사 (평양 순안일대) *김정은 참관,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 기조 표명	11.18.	정부, 북 ICBM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 발표 *도발 즉각 중단, '담대한 구상'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 한미, 북 ICBM 도발에 대응하여 F-35A 스텔스기 출격 국방부, '제1회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 개최
	11.19.	한미 연합공중훈련실시 *B-1B 한반도 재전개
외무상 담화 발표 *구테흐스 총장의 북 ICBM 발사 '도발'규정을 비난	11.21.	
김여정 담화 발표 *유엔 안보리의 북 ICBM 발사문제 논의를 '명백한 이중기준' 이라며 비난	11.22.	
	11.23.	제9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캄보디아) *북한이 핵포기 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력 요청 한·중 국방장관회담 (캄보디아) *북한이 대화에 나서도록 중국의 건설적 역할 당부 L-SAM, 표적 미사일 요격 시험 첫 성공
김여정 담화 발표 *남측 독자제재 검토 비난	11.24.	
	11.26.	DMZ내 백마고지 유해발굴 2단계 1차 유해발굴 종료
김정은, ICBM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촬영 및 포상 *둘째 자녀 대동	11.27.	
김정은 주관,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8기 6차 전원회의 소집 논의, 12월 하순 소집 결정	11.30.	

북 측	일자	남 측
	12.2.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개인 8명, 기관 7개) 추가 지정 *북 핵·미사일 개발관련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를 운송한 대상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한미의 사격훈련을 전선근접지대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 경고 동해상 (강원도 금강군일대) 방사포 (추정) 45여발 사격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내 탄착, 「9·19군사합의」 위반 서해상 (황해남도 장산곶일대) 방사포 (추정) 85여발 사격 *NLL 북방 해상완충구역내 탄착, 「9·19군사합의」 위반	12.5.	한미연합포병사격훈련 (12.5.~6.) *다연장로켓(MLRS), K-9 자주포 *MDL이남 5km 밖에 위치한 '딤타사격장'에서 사격 합참, 북 방사포 발사에 대한 경고 통신 *동·서해 해상완충구역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전선 근접 지대에서 도발적인 군사행동으로 규정하고, 중단"주장 총참모부, 대응 목적 '해상실탄포사격 단행' 명령 동해상 (강원도 고성군일대) 방사포 (추정) 90여 발 사격 동해상 (강원도 금강일대) 방사포 (추정) 10여 발 사격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남측의 「9·19군사합의」 위반 주장은 궤변, 자극적인 군사행동 중단 주장	12.6.	합참, 북 포병사격 중단 강력 촉구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 시험성공' 보도 *12.15. 김정은 현지지도하 진행, 140tf 출력 주장	12.16.	
중증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 (평안북도 동창리) *정찰위성개발 최종단계 중요시험	12.18.	정부, 북 미사일 발사 관련 경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 및 도발을 계속하는 행태에 대해 북정권에 대한 응분의 대가 경고
김여정 담화 발표 *대륙간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 기술 보유 강변, ICBM 정상각도 발사 시사, 「담대한 구상」 비난	12.20.	
	12.21.	한미 연합공군훈련 (12.21~22) *F-22, B-52H 전략자산 전개
외무성 대변인 담화 발표 *미국이 북의 자위권 행사를 비난하려는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비난 외무성 대변인 대답 *일본언론의 '북러무기거래설' 보도에 사실무근 주장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1발 발사 (평양 순안일대)	12.23.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
당 중앙위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12.26~31) 북 무인기(5) MDL 이남 침범 *경기 강화(4)·서울북부지역(1)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 위반	12.26.	합참, 경기 강화 및 서울북부지역 북한 무인기 침범 관련 대응 *무인기 침범 탐지, 유무인 정찰자산 투입하 작전 시행 *북 무인기의 우리 관할구역 침범에 따른 자위권차원의 상응조치로 MDL이북지역에 우리군 무인기 정찰활동 시행 *작전부장, 북 무인기 침범은 명백한 도발, 단호한 대응의지 표명
	12.28.	국방부, 「2023~2027 국방중기계획」 발표
	12.29.	합참, 소형무인기 도발 대비 합동방공훈련 시행 유엔사, 북 무인기 침범 관련 특별조사

북 측	일자	남 측
<p>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 발사 (황해북도 중화군) *600mm 초대형 방사포 김정은 주관, '초대형 방사포증정식' 행사 *남측지역 전역이 전술핵 사정권임을 언급</p>	12.30.	국방부, '고체연료추진 방식 우주발사체' 비행시험 성공 발표
	12.31.	합참, 북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규탄

북한의 대남 침투·국지도발 일지

연대별 침투 및 국지도발 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계	3,121	398	1,336	403	227	250
침투	2,002	379	1,009	310	167	94
국지도발	1,119	19	327	93	60	156

구분	2000년대	2010~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41	264	0	1	0	1
침투	16	27	0	0	0	0
국지도발	225	237	0	1	0	1

침투 및 국지도발 일지 (2020.12.1. ~ 2022.12.31.)

일자	주요 내용
2022.12.26.	북 소형 무인기 5대, 김포 전방 MDL 침범

연대별·유형별 침투 및 국지도발 세부현황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3,121	398	1,336	403	227	250	241	264	0	1	0	1
침투	직접 침투	1,749	375	988	298	38	50	0	0	0	0	0
	간접 침투	214	0	0	0	127	44	16	27	0	0	0
	월북·남북자 남파	39	4	21	12	2	0	0	0	0	0	0
	소계	2,002	379	1,009	310	167	94	16	27	0	0	0
국지도발	지상 도발	503	7	298	51	44	48	42	12	0	1	0
	해상 도발	559	2	22	27	12	107	180	209	0	0	0
	공중 도발	52	10	7	15	4	1	3	11	0	0	1
	GPS 교란	5	0	0	0	0	0	0	5	0	0	0
	소계	1,119	19	327	93	60	156	225	237	0	1	0

북한의 「9·19 군사합의」 주요 위반사례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일시	장 소	위반 종류
1	'19.11.23.	북한 창린도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해안포 사격
2	'20.5.3.	중부전선 우리측 GP	우리 GP에 총격
3	'22.10.14.	황해 마장동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4	'22.10.14.	강원 구읍리 일대	
5	'22.10.14.	강원 장전 일대	
6	'22.10.14.	황해 해주만 일대	
7	'22.10.14.	황해 장산곶 일대	
8	'22.10.18.	황해 장산곶 일대	
9	'22.10.18.	강원 장전 일대	
10	'22.10.19.	황해 연안군 일대	
11	'22.10.24.	황해 장산곶 일대	
12	'22.11.2.	NLL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해상	
13	'22.11.2.	강원 고성 일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
14	'22.11.3.	강원 금강 일대	
15	'22.12.5.	강원 금강·황해 장산곶 일대	
16	'22.12.6.	강원 고성·금강 일대	
17	'22.12.26.	서울 북부·경기 강화 일대	북한소형무인기(5대) 우리 관할지역 침입

※ 해안포 포문 개방, 포구덮개 마실시 등 기타 위반사례 다수 발생

연합·합동 연습 및 훈련 유형

한미 연합연습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자유의 방패 (FS,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연합방위체제 下 전구작 전지휘 및 전쟁수행절차 숙달 한미 연합작전 및 후방지역 안정화, 전쟁지속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위기관리 전시전환 전시 작전계획 시행
을지 자유의 방패 (UFS, Ulchi Freedom Shield)	전구급 연합 지휘소 연습+ 정부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UFS는 정부연습과 군사연습 통합 시행으로 국가 총력전 수행체계 숙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UFS시 정부연습 병행, 총무계획 시행

*2022년 7월, 한미 군사동맹의 전통을 계승하고 전구급 연합연습 체계를 재확립하기 위해 연합연습 명칭을 변경
(연합지휘소훈련, CCPT ⇒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UFS)
L,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

합동연습 및 훈련

연습명	형태	목적	내용
태극연습	전구급 합동 지휘소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참 주도의 작전지휘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기관리 전시전환 전시 작전계획 시행
호국훈련	전구·작전사급 야외기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구·작전사급 합동작전 수행능력제고 합동작전 운용 및 지원능력 배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지도발 및 전시 작전계획 시행 합동성 및 실전성 강화를 위한 실기동 훈련
화랑훈련	권역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절차 숙달 지역주민 안보의식 고취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태세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테러대비작전 침투·국지도발대비작전 전시전환 및 전면전 대비작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1년 12월 2일, 서울

1.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2021년 12월 2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서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III)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1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원인철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Mark A. Milley) 대장이 제46차 한미군사위 원회회의(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1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가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양국 정상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상호 신뢰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라는 공유된 가치들에 기반한 양국 간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합의된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연합 방위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합중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우주 능력 등 동맹에 가용한 모든 능력을 활용하여 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대한 공동의 약속, 그리고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간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남북 간 2018년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2018년 북미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 그리고 2005년 6자회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북미, 그리고 다자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면서, 굳건한 연합대비태세와 국제 제재 유지를 통해 외교적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국제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4. 양 장관은 한반도에서의 정전협정,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남북 군사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조치들이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전쟁 위험 감소와 접경지역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 이행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굳건한 남북대화 와 관여, 협력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한미 군사당국 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 장관은 유엔사의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에 관한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그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8년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약체(KIDD)의 일환으로 실시된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증진하고, 맞춤형 억제전략 실행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가 철통같이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핵, 기타 WMD, 그리고 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통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한측의 노력을 평가하고, 정례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케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상시 준비태세 유지, 연합방위능력 향상, 관련 작전계획을 최신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양 장관은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하였다. 이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 전략기획지침은 동맹의 기획노력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다. 양 장관은 이 전략기획지침이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에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의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21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실시되었고, 이와 함께 연중 균형되게 실시된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연합지휘소훈련이 동맹 준비태세 유지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사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지속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10.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 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주한미군의 훈련을 위해, 한측 시설 및 공역을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으로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개발을 위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는 점에 사의를 표하면서, 연합사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이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험프리스 기지 내 이전이 연합작전능력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내년까지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지정된 이행과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관련 진전에 주목하였으며,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와 병행하여,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능력에 관한 포괄적인 공동연구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수정 1호'의 부록 및 별지 개정을 2022년 상반기 KIDD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제54차 SCM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한미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서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을 지속 확충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핵심군사능력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반영된 지속능력과 대한민국이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제공할 보완 능력에 관한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측이 핵심군사능력들을 획득, 개발하기로 했음에 주목하였고, 한측의 획득계획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현재와 같은 굳건한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례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새로운 영역에서의 개발 및 협력이 다양한 위협에 대한 동맹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를 발전시키고,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사이버와 우주 같은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긴밀하게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비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와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를 통해 동맹으로서 우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 발전방안 모색과 동맹의 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양자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를 포함한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사이버 위협 동향 공유 및 양국 정책의 진행 상황 논의를 위해 2022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등 사이버 영역에 대한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하였고, 양국 상호이익에 대한 논의와 증진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간 협력 및 교류를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국방 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 건설과 획득, 군수 그리고 기술보호 분야 등을 다루는 한미 협의회 간 교류 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등 분야에서 주요 현안의 추진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적시성 강화를 위한 양자 협의회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었음을 재확인하고, 5G, 차세대 이동 통신(6G)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6. 양 장관은 지역 및 세계의 복잡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세계의 안보도전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 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항행과 비행의 자유 등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와 국제 규칙 및 규범 준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공동으로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정치적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서울에서 개최되는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의 성공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대해적 작전, 안정화 및 재건 노력, 지역 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서 장관은 금년 미국 정부의 한국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이 세계적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서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을 도운 현지인 직원 및 가족들을 한국으로 이송한 대한민국 정부의 “미라클 작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국방부의 긴밀한 소통 및 공조에 주목하면서, 인도주의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준 미국 정부와 모든 미군 장병에게 사의를 표명하였다.

17.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 방지, 필요시 WMD 위협을 경감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WMD 대응(CWMD)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국방부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8. 양 장관은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DTT) 및 3국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19. 양 장관은 용산기지 반환을 포함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부지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해 환경 여건과 보안 소요 등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국의 적절한 보안 울타리 설치 후, 2022년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토지가 반환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사용이 종료된 용산기지 구역에 대해 필요한 모든 이전 및 방호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반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SOFA 채널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정립된 절차 속에서 유관 현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을 위해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대한민국 국회 비준 동의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SMA가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21.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3차 SCM과 제46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을 2022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2022년 11월 3일, 미국 워싱턴 D.C.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공동으로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 대장이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 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동맹의 가치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및 확산 활동에 관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

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 등 양자 협의체가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소통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의 「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 및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측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견인하기 위한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와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기존 합의를 상호적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이종섭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남북 간의 군사력

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양국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 준수와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정상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6. 양 장관은 라케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최신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UF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연계하여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아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역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아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추가적인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군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장기적인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핵심인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평택 기지(U.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능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 '22-2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침이 포함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부록 완성분을 승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수준의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의 핵·미사일·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가운데,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내에서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 우주정책 공동연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동맹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험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한미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양자간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중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분야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14.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협력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지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모색하고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국내외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양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 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일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8. 이종섭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 주둔비용 직·간접 지원 규모

지속적 지원내역 : 약 3.4조 원

단위 : 억 원

구분	분류	세분	항목	2021년
직접지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5,598), 군사건설(4,368), 군수지원(1,867)	11,833
			美 통신선·연합C4체계 사용	210
	국방예산	방위비분담금 외	카투사 병력지원	169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2,789
	국방예산 외 지원		부동산 지원	95
			기지 주변 정비 비용(주변 도로사업, 지역개발)	5,917
	직접지원 합계			
간접지원	기회 비용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10,739
			카투사 기회 비용	904
			훈련장 사용지원	337
	면제 및 감면 비용		관세, 내국세, 지방세, 석유 수입 및 판매 관련 세금 면제	1,247
			상하수도료, 전기료, 가스사용료, 전화통신료 감면	97
			도로, 항만, 공항, 철도 이용료 면제	93
간접지원 합계				13,417
총계				34,430

항목별 설명

구분	내용	관련 근거
美 통신선·연합C4I 체계 사용	美 통신선 사용료 및 연합C4I체계 지원비	한미연합사 통신비용부담합의서, 비용분담 및 정보 상호 운용성 체계에 관한 이행협정서
카투사 병력지원	카투사 병력에 대한 기본급·피복비 및 한국군지원단 운영비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 구두협약
기지정비 및 이전 관련 비용	반환기지 내 구 시설물 철거 및 환경정화비용,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용역 등	SOFA 제2조·제5조, SOFA 양해사항 제2조·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부동산 지원	시설부지·사용부지의 매입비, 사용료, 보상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제5조, SOFA 양해사항 제2조·제3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기지 주변 정비비용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비용 (주변 도로정비, 지역개발 지원 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제3조·제5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및 미군이전평택지원법
무상 공여토지 임대료 평가	주한미군에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공여 토지의 임대료 기회비용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 SOFA 제2조,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카투사 기회 비용	카투사 병력이 미군일 경우를 가정시, 미군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 간 구두협약
훈련장 사용지원	주한미군 훈련장·사격장 이용 지원 비용	SOFA 제2조·제5조, 한국군 훈련장·사격장의 주한 미군 이용에 관한 각종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면제 및 감면 비용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을 면제 또는 감면	SOFA 제6조·제10조·제14조·제16조

국제 방산협력협정 체결 현황

국제 방산협력협정(양해각서) 체결국 : 46개국

2022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상대국	체결년도
미국	1988. 6.	태국	1991. 11.	스페인	1992. 3.	프랑스	1992. 3.
영국	1993. 9.	필리핀	1994. 5.	이스라엘	1995. 8.	인도네시아	1995. 10.
캐나다	1996. 5.	독일	1997. 11.	러시아	1997. 11.	루마니아	1997. 11.
네덜란드	1999. 6.	튀르키예	1999. 12.	베네수엘라	1999. 12.	베트남	2001. 8.
호주	2001. 8.	방글라데시	2004. 1.	인도	2005. 9.	파키스탄	2006. 5.
우크라이나	2006. 12.	콜롬비아	2008. 5.	이집트	2009. 12.	에라도르	2010. 1.
페루	2010. 6.	UAE	2010. 9.	노르웨이	2010. 9.	덴마크	2011. 5.
폴란드	2014. 5.	칠레	2015. 8.	체코	2015. 8.	핀란드	2016. 6.
헝가리	2016. 7.	보츠와나	2017. 1.	에스토니아	2017. 2.	크로아티아	2017. 2.
사우디아라비아	2017. 9.	카자흐스탄	2017. 10.	아르헨티나	2019. 2.	우즈베키스탄	2019. 4.
뉴질랜드	2019. 5.	스웨덴	2019. 6.	파라과이	2019. 10.	에티오피아	2020. 12.
바레인	2021. 9.	요르단	2021. 10.				

기타 방산협력 관련 협정(양해각서) 체결 현황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국제기술협력·보호 협정(21개국)	품질보증 협정(25개국)	가격 정보 제공 협정(4개국)
국가	<p>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인도,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UAE, 폴란드, 이집트, 노르웨이, 다자간*</p> <p>* 미국 등 14개국 다자간 체결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p>	<p>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필리핀, 독일, 이스라엘, 터키, 뉴질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스웨덴, 페루, 노르웨이, 콜롬비아, 베트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p>	<p>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p>

국방협력협정¹⁾ 체결 현황

2022년 12월 기준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상대국	체결연월
독일	1994. 5.	싱가포르	2009.12.	아제르바이잔	2013.12.	미얀마	2017. 9.
캐나다	1995. 5.	리투아니아	2010. 2.	뉴질랜드	2014. 5.	캄보디아	2018. 9.
이스라엘	1995. 8.	인도	2010. 9.	카타르(조약)	2014.11.	브루나이	2018. 9.
러시아	1996.11.	카자흐스탄	2010. 9.	체코	2015. 2.	이탈리아 (조약)	2018.10.
터키	1999.11.	베트남	2010.10.	콜롬비아	2015. 3.	칠레(조약)	2019. 4.
몽골	1999.12.	루마니아	2010.10.	불가리아	2015. 5.	바레인	2019. 6.
쿠웨이트	2004.11.	가봉	2011.10.	투르크메니스탄	2015. 5.	오만	2019.10.
브라질(조약)	2006. 3.	페루	2011.10.	파라과이	2016. 1.	세네갈	2019.10.
우크라이나	2006. 9.	호주	2011.12.	에티오피아	2016. 5.	헝가리	2019.11.
UAE(조약)	2006.11.	태국	2012. 3.	우간다	2016. 5.	러시아(조약)	2021. 3.
스페인	2006.12.	중국	2012. 7.	에콰도르	2016. 7.	라오스	2021. 6.
우즈베키스탄	2008. 6.	사우디아라비아 (조약)	2013. 2.	보츠와나	2017. 1.	말레이시아	2022. 4.
일본	2009. 4.	인도네시아 (조약)	2013.10.	피지	2017. 1.	슬로바키아	2022. 9.
스웨덴	2009. 7.	필리핀	2013.10.	이집트	2017. 3.	파키스탄	2022. 10.
요르단(조약)	2009.10.	폴란드(조약)	2013.10.	앙골라	2017. 3.		

1) 의의 : 상호 본격적 국방협력 추진을 위한 기본합의서 성격의 문서로서, 협력 원칙분야방식 등 포괄적 사항 규정
내용 : 협력원칙(상호 호혜주의 등), 협력 범위(군사정보군인사 교류, 방산, 군수 등), 행정사항(비용부담, 효력발생 등) 등

국제 군축 및 비확산 협약 및 기구

2022년 12월 기준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유엔 관련 기구	유엔 총회 제1위원회 (First Committee)	193개국 (1945.10.)	한국(1991.9.) 북한(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총회 6개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및 국제안보 의제 논의 · 매년 50~60여 개의 결의안 초안을 총회에 권고하며, 대부분 본회의에서 그대로 채택
	유엔 군축위원회 (UNDC : UN Disarmament Commission)	193개국 (1952.1.)	한국(1991.9.) 북한(199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축·비확산 분야 주요 이슈 3개를 선정, 심층 검토하여 유엔 총회에 보고서 제출 ·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의 방향, 원칙 등을 도출해 내는 심의기구
	제네바군축회의 (CD : Conference on Disarmament)	65개국 (1984.2.)	한국(1996.6.) 북한(199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군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국제협상기구 · 군축 관련 주요 다자조약의 대부분이 군축회의에서 교섭을 통해 탄생 · 유엔 총회의 직속기구는 아니나 유엔 정규예산으로 운영되고, 독자적으로 의제 및 의사규칙 결정 · 매년 유엔 총회에 정기보고서 제출
핵무기	핵확산금지조약 (NPT :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191개국 (1970.3.)	한국(1975.4.) 북한(1985.12.) *2003.1.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의 확산 방지 및 핵군축 실현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국제원자력기구 (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73개국 (1957.7.)	한국(1957.8.) 북한(1974.9.) *1994.6. 탈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 핵물질의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방지
	포괄적핵실험 금지조약 (CTBT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174개국 (미발효, 186개국 서명)	한국(1999.9.)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체의 핵실험(대기권, 외기권, 수중 및 지하 포함) 금지
	핵무기금지조약 (TPNW :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68개국 (2021.1)	남·북한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무기의 개발·실험·생산·제조 등을 통한 획득·보유·축적 금지 · 핵무기 또는 그 통제권의 직간접 이전·접수 금지 · 핵무기 사용 또는 사용 위협 금지
미사일 및 우주	탄도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헤이그 행동규약 (HCoC : Hague Code of Conduct against Ballistic Missile Proliferation)	143개국 (2002.11.)	한국(2002.11.)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도미사일 확산 방지를 위한 정치적·자발적 성격의 행동지침
	외기권평화적 이용위원회 (COPUOS : Committee on the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100개국 (1959.12)	한국(1994.9.)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기권의 탐사 및 평화적 이용에 관한 기술적·법률적 문제의 기본원칙 제시
생물화학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184개국 (1975.3.)	한국(1987.6.) 북한(1987.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무기(작용제 및 독소)의 개발, 생산, 비축 전면 금지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 Chemical Weapons Convention)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무기 개발, 생산, 비축, 사용, 이전 전면 금지 · 가입 후 10년 내 모든 화학무기·시설 폐기 · 불가피한 경우 5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가입국 (발효·설립)	남북한 가입현황	주요 내용	
생물화학무기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193개국 (1997.4.)	한국(1997.4.) 북한(미가입)	· 화학무기금지협약 의무 이행 감시 및 사찰을 위한 집행기구
	무기거래조약 (ATT : The Arms Trade Treaty)	113개국 (2014.12.)	한국(2017.2.)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의 불법거래 및 전용을 방지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보에 기여 ·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규정
재래식무기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 (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126개국 (1983.12.)	한국1의정서 (2001.5.) (개정)2의정서 (2001.5.) 5의정서(2008.1.) 북한(미가입)	· 정식명칭 :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제1의정서 : X-ray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 제2의정서 : 지뢰, 부비트랩 등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 제3의정서 : 화염무기의 사용금지 및 제한 - 제4의정서 :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 제5의정서 : 전쟁잔류폭발물 규제
	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도 (UNRCA : United Nations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	193개국 (1991.12.)	한국(1993.3.) 북한(미참여)	· 재래식무기 수출입 실적 및 보유현황 등을 유엔에 등록 · 재래식무기 이전 정보 공유 및 군비 투명성 제고를 통한 신뢰 증진
	대인지뢰금지협약 (Ottawa Convention)	164개국 (1999.3.)	남·북한 미가입	· 대인지뢰의 생산, 사용, 비축, 수출 전면금지 · 대인지뢰 폐기(비축분 4년 이내, 매설분 10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0년까지 연장 가능
	확산탄금지협약 (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110개국 (2010.8.)	남·북한 미가입	· 모든 확산탄의 생산, 사용, 비축, 이전 전면 금지 *현재 비축 확산탄은 8년 내 폐기
	쟁거위원회 (ZC : Zangger Committee)	39개국 (1974.8.)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NPT 미가입 핵비보유국에 대한 핵 관련 물자 수출시 IAEA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수출 · NPT 회원국만 가입 가능
	핵공급국그룹 (NSG : Nuclear Suppliers Group)	48개국 (1978.1.)	한국(1995.10.) 북한(미가입)	· 핵물질, 기술, 장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 NPT 회원국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핵 비보유국에 대해 수출 통제
다자수출 통제체제	호주그룹 (AG : Australia Group)	43개국 (1985.6.)	한국(1996.10.) 북한(미가입)	· 화학·생물무기 관련 물질,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 등이 우려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출통제체제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MTCR :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35개국 (1987.4.)	한국(2001.3.) 북한(미가입)	·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로켓, 무인비행체 및 관련 장비·기술의 확산을 자발적으로 통제하는 체제
	바세나르체제 (WA : Wassenaar Arrangement)	42개국 (1996.7.)	한국(1996.7.) 북한(미가입)	· 재래식무기와 이중용도 품목 및 기술에 관한 수출통제 체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확산방지구상 (PSI :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s)	107개국 (2003.6.)	한국(2009.5.) 북한(미가입)	· 불량국가 및 테러집단에 의한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및 관련물자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우리 군의 해외파병 현황

총 13개 지역 1,005명

2022년 12월 기준

구분		현재 인원	지역	최초 파병	교대주기		
UN 평화 유지 활동	부대단위	레바논 동명부대	티르	2007. 7.	8개월		
		남수단 한빛부대	보르	2013. 3.			
	개인단위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UNMOGIP)	6	이슬라마바드 등	1994. 11.	1년	
		남수단 임무단(UNMISS)	10	주바 등	2011. 7.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4	나쿠라	2007. 1.		
		서부사하라 선거감시단(MINURSO)	3	리운 등	2009. 7.		
소계		577					
다국적군 평화활동	부대단위	소말리아해역 청해부대	소말리아해역	2009. 3.	6개월		
		바레인 연합해군사령부	참모장교	5		바레인	2008. 1.
		국제해양안보구상 (IMSC)	연락장교	2		바레인	2020. 2.
	개인단위	지부티 아프리카사령부 연합합동기동부대 (CJTF-HOA)	협조장교	1	지부티	2009. 3.	1년
		미국 중부사령부	협조단	3	플로리다	2001. 11.	
		미국 아프리카사령부	협조장교	1	슈투트가르트	2016. 3.	
		이라크·쿠웨이트 다국적군지원사령부 (CJTF-OIR)	참모장교	2	쿠웨이트 아리프잔	2019. 12.	
		이라크 바그다드	2		2022. 8.		
		EU 소말리아 해군사령부 (CTF-465)	참모장교	1	소말리아해역	2020. 3.	9개월
	소계		280				
국방협력	부대단위	UAE 아크부대	아부다비	2011. 1.	8개월		
	소계		148				
총계		1,005					

병사 봉급 변화 추이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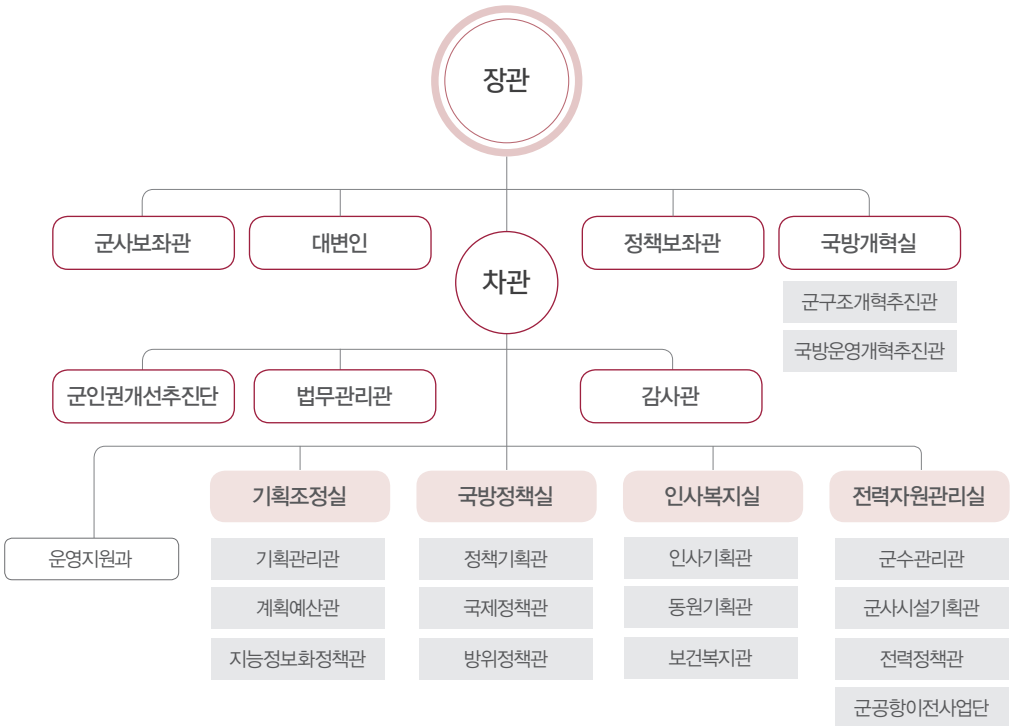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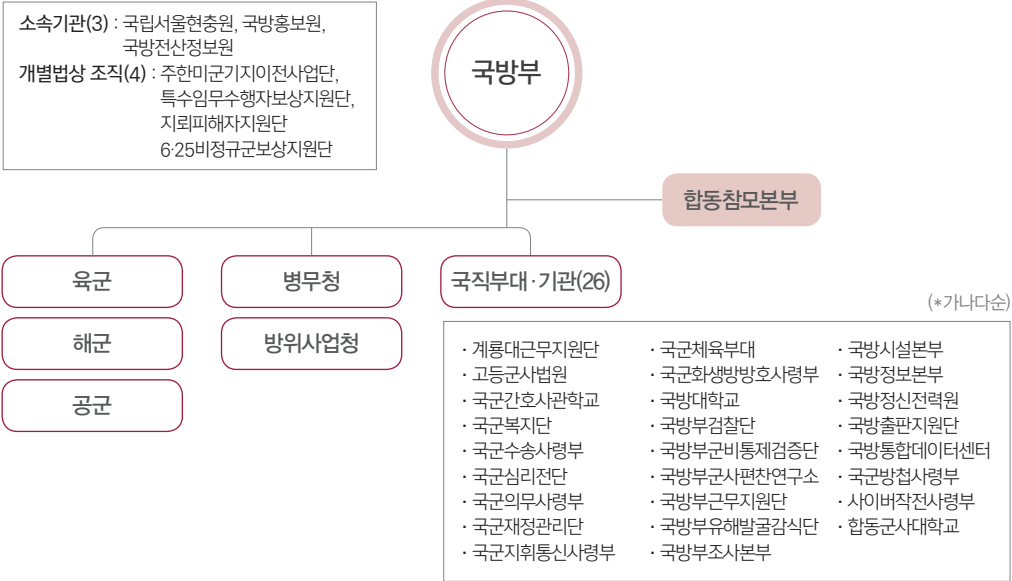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연도	병장	상병	일병	이병
1970년	900	800	700	600	2002년	21,900	19,800	17,900	16,500
1971년	1,030	920	800	690	2003년	23,100	20,900	18,900	17,400
1972년	1,200	1,050	900	800	2004년	34,000	30,700	27,800	25,600
1973년	동결				2005년	44,200	39,900	36,100	33,300
1974년	1,560	1,370	1,170	1,040	2006년	72,000	65,000	58,800	54,300
1975년	동결				2007년	88,600	80,000	72,300	66,800
1976년	2,260	1,990	1,700	1,510	2008년	97,500	88,000	79,500	73,500
1977년	2,890	2,540	2,170	1,930	2009년	동결			
1978년	3,460	3,050	2,600	2,320	2010년	동결			
1979년	3,800	3,300	2,900	2,600	2011년	103,800	93,700	84,700	78,300
1980년	3,900	3,400	3,000	2,700	2012년	108,000	97,500	88,200	81,500
1981년	동결				2013년	129,600	117,000	105,800	97,800
1982년	4,200	3,700	3,300	3,000	2014년	149,000	134,600	121,700	112,500
1983년	4,500	3,900	3,500	3,200	2015년	171,400	154,800	140,000	129,400
1984년	동결				2016년	197,000	178,000	161,000	148,800
1985년	4,600	4,000	3,600	3,300	2017년	216,000	195,000	176,400	163,000
1986년	4,900	4,300	3,900	3,500	2018년	405,700	366,200	331,300	306,100
1987년	5,100	4,500	4,000	3,600	2019년	동결			
1988년	7,500	6,500	6,000	5,500	2020년	540,900	488,200	441,700	408,100
1989년	8,300	7,000	6,500	6,000	2021년	608,500	549,200	496,900	459,100
1990년	9,400	8,200	7,300	6,600	2022년	676,100	610,200	552,100	510,100
1991년	10,000	9,000	8,000	7,200					
1992년	10,900	9,800	8,700	7,800					
1993년	11,300	10,100	9,000	8,100					
1994년	11,700	10,400	9,300	8,400					
1995년	12,100	10,700	9,600	8,700					
1996년	12,700	11,200	10,100	9,100					
1997년	13,300	11,800	10,600	9,600					
1998년	동결								
1999년	동결								
2000년	13,700	12,200	10,900	9,900					
2001년	19,600	17,700	16,000	14,800					

*출처 : - 1983년~2021년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 1970년~1982년 군인보수법시행령(대통령령)
별표 2 병의 봉급표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

연도	복무기간(개월)			조정사유
	육군·해병	해군	공군	
1952년 이전	전역제도 없음			6·25전쟁 발발로 「병역법」의 정상적 시행 불가
1953년	36	36	36	6·25전쟁 후 장기복무자 전역 조치
1959년	33	36	36	병역부담 완화
1962년	30	36	36	병역부담 완화
1968년	36	39	39	1·21사태로 복무기간 연장
1977년	33	39	39	잉여자원 해소 및 산업기술 인력 지원
1979년	33	35	35	해·공군병 획득난 해소
1984년	30	35	35	병역부담 완화
1990년	30	32	35	해군병 획득난 해소
1993년	26	30	30	방위병제도 폐지로 인한 잉여자원 해소
1994년	26	28	30	해군병 획득난 해소
2003년	24	26	28	병역부담 완화
2004년	24	26	27	공군병 획득난 해소
2008년	24 → 18	26 → 20	27 → 21	병역부담 완화를 위해 6개월 단축 추진 (2014년까지 단계적 추진)
2011년	21	23	24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 등으로 기존 6개월 단축을 3개월 단축으로 조정
2018년	21 → 18	23 → 20	24 → 22	병력중심의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병역부담 완화(「국방개혁 2.0」)
2020년	18	20	22 → 21	「국방개혁 2.0」 후속조치

국방기구도



소속기관 및 개별법상 조직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소속기관	국립서울현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장위패봉안·추모식 등 위령행사 실시 · 참배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 · 현충선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국립서울현충원 홍보 · 국립서울현충원 시설·묘역산림의 관리 및 운영
	국방홍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일보, 국방TV 및 국방FM, 국방누리(뉴미디어)등을 통한 군 홍보 및 장병교육 · 국방뉴스, 시사보도물 제작 및 사이버 홍보 · 국방관련 행사 사진촬영 및 기록 관리 등
	국방전산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자원관리 정보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 국방부분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전산장비 획득·운영 · 국방부분부·소속기관 및 일부 국직부대(기관)의 사무용 전산기기/SW 획득·운영 및 지원 · 정보화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별법상 조직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집행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주한미군기지가전특별회계의 관리·운영의 지원 · 그 밖에 주한미군시설사업의 추진 등을 위한 업무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준비 및 지원 ·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대응 등
	지뢰피해자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 피해자 및 유족여부심사, 장애등급판정 실무위원회 · 위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그 밖에 지뢰피해자 지원 관련 업무 및 민원 대응 등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준비 및 사무업무 지원 · 공로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신청인 자료확인 및 조사 · 법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 등

공공기관의 임무 및 기능

구분	임무 및 기능
공공기관	한국국방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보환경 및 국방기본정책에 관한 연구와 대안의 개발 ·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무기체계의 선정 및 획득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인력·자원관리 및 국방과학기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 국방정보화 정책연구, 국방정보화 관련 사업의 개발지원 및 기술자문 · 국방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수집, 분석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전쟁기념사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기념관 및 기념탑 운영 · 전쟁 및 군사유물의 수집, 보존, 관리, 전시 및 조사·연구 · 전쟁사 및 군사유물 연구, 호국인물 발굴 및 현양 및 기타 학예활동 ·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와 교육 및 각종 관련 간행물의 작성·배부 등
	국방전직교육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역예정군인 전직관련 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 · 전역예정군인 취업정보 제공,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촉진 · 전역예정군인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통계 유지·분석 · 전역예정군인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제도발전 연구 등

국방부 소관 법령정비 현황

법령정비 현황(2020.12.1. ~ 2022.12.31.)

합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160	46	66	48

법률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정 제17680호 (2020.12.22.)	·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적법한 직무 집행을 보장하고 직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 제17683호 (2020.12.22.)	· 방위사업청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부정당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개정
통합방위법	일부개정 제17686호 (2020.12.22.)	· 정부 각 기관의 대공(對共)정보업무를 조정·분담하고, 적의 침투·도발 및 적의 정황에 관한 첩보를 수집하며, 정보를 판단하여 지역 작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적의 부대나 요원의 출현, 그 밖의 대공혐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현지의 상황을 조사·분석하고, 체포된 포로에 대하여 일차적으로 신문(訊問)하기 위한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개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7823호 (2021.1.5.)	· 이 법의 목적과 5·18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를 명시하며,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국론 분열을 방지하고 5·18 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로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제17991호 (2021.4.13.)	·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하였으나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기 위해 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2호 (2021.4.13.)	· 6·25전쟁에는 국군뿐만 아니라 21개국의 유엔군이 참전하였음에도 이들의 유해 발굴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있어 6·25전쟁 중 사망하였거나 참전하였다가 실종된 유엔군의 유해 발굴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를 하기 위한 개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제17993호 (2021.4.13.)	· 6·25전쟁 중 자발적으로 결성된 유격대나 미8군 및 미 극동군사령부의 첩보 부대 등에 소속되어 비정규전을 수행한 공로자와 그 유족의 경우 외국인 소속이거나 정규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군 공로자와 그의 유족에 대한 보상절차 및 공로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참전 및 특수임무 수행에 대한 공로를 기리기 위해 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4호 (2021.4.13.)	· 공직자 본인과 직계비속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배우자(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함) 역시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여 고위공직자의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이바지 하기 위한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7995호 (2021.4.13.)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7996호 (2021.4.13.)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군인사법」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채용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려는 개정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제17997호 (2021.4.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입회"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참관"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7998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우리말 어법에 맞는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제17999호 (2021.4.13.)	· 국방부장관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주택관리전문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 주거시설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설 노후화를 방지하여 군인가족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8000호 (2021.4.13.)	·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와 동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휴직 사유를 추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1호 (2021.4.13.)	· 사법경찰관에게도 불송치결정 등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법률 제16924호, 2021.1.1.시행), 대체복무요원의 예외적인 복무기간 인정 사유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으로 석방된 경우를 추가하려는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2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저리"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저금리"로 순화하려는 개정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8004호 (2021.4.13.)	· 제대군인의 경우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하여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005호 (2021.4.13.)	· 일본식 한자어인 "개호"를 우리말 어법에 맞는 "간병"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8007호 (2021.4.13.)	· 평택시의 국제화계획지구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경우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촉진하여 내·외국인간 문화교류 활성화가 가능한 인적·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해당 국제화계획지구가 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국제신도시로 조성되는 데 기여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제18465호 (2021.9.24.)	· 군 사법(司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피해자의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군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 군 장병의 재판받을 권리와 군조직의 특수성이 조화된 사법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제18486호 (2021.10.19.)	·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전부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8540호 (2021.12.7.)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불합복무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선발된 사람의 소집기간을 연간 180일 이내로 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8541호 (2021.12.7.)	· 예비군 중 일부 인원을 연간 최대 180일까지 소집하여 동원부대의 주요 직위에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상근 예비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개정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679호 (2022.1.4.)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중단 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의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8680호 (2022.1.4.)	· 최근 육군 학생군사학교의 사관후보생에 대한 퇴교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퇴교 처분근거 및 사관후보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각각 교육훈련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하고, 고의·중과실 및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
병역법	일부개정 제18681호 (2022.1.4.)	· 병역준비역 및 예비역으로 편입된 경우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에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병역의무대상자에게 병역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
국방정보보호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800호 (2022.2.3.)	· 국방정보보호의 정의에 예방뿐만 아니라 대비·대응·복구의 개념까지 포함시키고, 국방정보침해에 대한 대응체계에 복구체계를 포함하여 침해 이후 안정적이고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방정보화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취소 시 청문 절차를 마련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8801호 (2022.2.3.)	· 군 복무 중 타인의 본보기가 되는 행위를 한 군인의 경우 신체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군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군인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는 한편, 군무원이 본인의 동의로 강입된 경우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기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8802호 (2022.2.3.)	· 전쟁·재난 등 특수상황 발생 시 군의 응급환자 처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군작전 수행 중에는 군시설 등 한정된 영역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인 등도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일부개정 제18803호 (2022.2.3.)	· 현행법은 유족 중 자녀 및 손자녀의 기준을 19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퇴직유족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군인 재해보상법」에서도 이 법에 따른 유족의 기준을 준용하여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민법」상 성년인 19세에 이르더라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자녀 및 손자녀의 퇴직유족급여 수급 가능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 가능 때까지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제18804호 (2022.2.3.)	· 현행법 제정 이전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의 기간 동안 「군인연금법 시행령」에서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의 경우에만 상이등급 제7급으로 인정하였는데, 최근 법원이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의 상이등급 적용대상을 여자로 한정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판결하였는바, 남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상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으므로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확대하기 위한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개정 제18805호 (2022.2.3.)	· 대규모 방위력개선 및 국방부 전력유지·시설 사업 등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현재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는 국방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 제도의 법적근거가 미흡한바, 사업타당성조사 및 사업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비용 출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조사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전문적인 검토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를 사업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개정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 제18806호 (2022.2.3.)	·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보안 유지가 필요한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사업을 추가하려는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1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굴토(掘土)"를 "땅파기"로 순화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2호 (2022.12.1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이 신고대상자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3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勘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 제19074호 (2022.12.13.)	· 군무원의 성 비위 근절을 위하여 성폭력, 성매매 및 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제19075호 (2022.12.13.)	· 「군사법원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인용조문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범위에 경찰, 검찰 이외에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군사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제19076호 (2022.12.13.)	·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 제19077호 (2022.12.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와 법률용어인 "중심선상부"를 "중심선의 최상부"로, "개폐"를 "개정 또는 폐지"로, "도시(圖示)하면"을 "그림으로 나타내면"으로 순화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일부개정 제19078호 (2022. 12. 13.)	·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27세)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소위 임용 최고연령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시·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등의 경우에 부사관 인력을 적시에 보충할 수 있도록 장교와 같이 부사관에 대해서도 임시계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교의 휴직 및 복직 권한의 위임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휴직 및 복직권자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제19079호 (2022. 12. 13.)	· 국가가 군인의 생활여건 보장을 위하여 병영생활과 밀접한 급식, 피복, 주거 등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 고려하여 조달 및 보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양질의 생활여건을 보장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 제19080호 (2022. 12. 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보철구(補綴具)"를 "보조기구(補助器具)"로 순화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일부개정 제19082호 (2022. 12. 13.)	· 예비군대원 본인을 대신하여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세대주 등이 소집통지서 원본을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및 훈련 도중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용 부담 주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일원화하는 등의 개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제19083호 (2022. 12. 13.)	·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3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 인력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19084호 (2022. 12. 13.)	·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본식 한자어인 "감안"을 "고려"로 순화하려는 개정

대통령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198호 (2020.12.1.)	· 국방과학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에 해병대의 참여를 보장하고, 해병대 소관 방위 분야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듣기 위해 국방부장관,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의 당연직 이사에 해병대사령관을 추가하려는 개정
사단령	일부개정 제31275호 (2020.12.22.)	· 앞으로는 보병사단뿐만 아니라 신속대응사단 등 보병사단이 아닌 사단도 두기 위하여 보병사단령의 제명을 사단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용어도 함께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540호 (2021.3.16.)	·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청사건의 심사·결정을 위원과 소청인 등이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542호 (2021.3.23.)	· 「통합방위법」이 개정(법률 제17686호, 2021.3.23.시행)됨에 따라 정보센터와 합동정보조사팀의 편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원활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통합방위회의의 참석 대상에 소방본부장을 추가하려는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 제31557호 (2021.3.30.)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과 사업비 환수의 기준 및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성과물의 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1560호 (2021.3.30.)	· 필요한 인원을 증원하는 한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626호 (2021.4.20.)	·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자녀를 비롯한 손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한 군인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재해구호휴가를 10일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31627호 (2021.4.20.)	·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군 참모총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군인의 가족 등 주변인이 연대보증으로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를 방지하는 한편, 국외에 유학 중인 군위탁생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일시 귀국 승인권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군위탁생이 수학 중 허가 없이 교육기관을 옮기거나 전과를 하여 해임된 경우 등에 반납해야 하는 지급경비를 감액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674호 (2021.5.11.)	·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체계지원 요소의 개념을 도입하고, 무기체계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부분품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 방위산업물자의 범위에 부분 국산화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부품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724호 (2021.6.8.)	· 공동이용시설 및 주민공동체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1796호 (2021.6.22.)	·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해성 군사경찰장비의 종류·사용 기준, 손실보상의 기준, 보상금액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임기제부사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 제31799호 (2021.6.22.)	· 유급지원병의 명칭을 임기제부사관으로 변경하고, 복무기간의 상한을 1년 6개월에서 4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의 복무기간, 임기제부사관의 선발 취소 사유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기제부사관의 장기복무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800호 (2021.6.22.)	·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보 수사기관의 협조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881호 (2021.7.13.)	·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위탁하고 있던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1904호 (2021.7.23.)	· 국방개혁실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25일까지에서 2023년 7월 25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908호 (2021.7.27.)	·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교수 등의 징계에 관하여 모두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출판지원단령	전부개정 제31909호 (2021.7.27.)	· 종이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형태의 출판물에 관한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수 있도록 국군인쇄창의 명칭을 국방출판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국방출판지원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및 보급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계엄사령부직제	일부개정 제31910호 (2021.7.27.)	· 군 조직 운영 및 계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군인으로서 임명하고 있는 계엄사령부의 각 처장 및 실장을 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1924호 (2021.8.3)	· 예비군대원의 민간의료시설에서의 진료 제한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21호 (2021.10.5.)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택지의 공급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여 공급하도록 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와 협의한 가격에 따르도록 하며, 조성원가는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를 명확히 하려는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2호 (2021.10.14.)	·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는 등 입학연령 상한의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3호 (2021.10.14.)	· 입학연령의 상한을, 2년 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3세, 1년 이상 2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2세, 1년 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경우 1세 연장하는 등 국군간호사관학교 입학연령 상한 연장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 제32034호 (2021.10.14.)	· 군인의 부정청탁 등 비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징계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의 범위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등을 추가하려는 개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제32036호 (2021.10.14.)	·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991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특별진급의 신청 방법 및 특별진급의 제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제32037호 (2021.10.14.)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93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공로금의 지급 기준·금액, 공로금의 지급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39호 (2021.10.14.)	· 신고대상자인 배우자의 범위를 병역준비역에 편입되었으나 신고의무자와의 혼인 당시 징집 또는 소집되지 않은 사람,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보충역·대체역 등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중인 사람 및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역에서 제적된 사람 등으로 정하려는 개정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40호 (2021.10.14.)	·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주택관리전문기관은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 분야의 전문인력, 주택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등의 시설과 장비, 군 숙소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군 숙소 관리에 필요한 보안성 및 안전성 등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041호 (2021.10.14.)	· 우리나라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절차에 따라 유엔군 유해를 조사·발굴하여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 유해의 국적을 결정한 후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등 유엔군 유해의 처리 절차를 정하는 한편, 국방부장관이 유해발굴감식단장에게 위임하고 있던 전사자유해의 조사·발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도록 변경하려는 개정
국군복지단령	일부개정 제32153호 (2021.11.30.)	· 현재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임명하고 있는 국군복지단장을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하도록 하려는 개정
육군항공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154호 (2021.11.30.)	· 육군미사일사령부, 해군잠수함사령부와 같이 특정분야의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 명칭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명칭을 육군항공사령부로 변경하고, 군 인사·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육군항공사령부에 두는 참모장 직급을 장성급 장교에서 영관급 장교로 조정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155호 (2021.11.30.)	·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군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의 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이 임용 전에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근무한 경우 그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 등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과 유사한 신분을 갖는 군무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250호 (2021.12.28.)	·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하여 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재정지원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재정지원금 규모에 대하여 본인의 적금 입금액,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입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퍼센트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 적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정하는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2257호 (2021.12.28.)	· 국방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군공항이전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1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2명(기군 1명, 나군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으로 전환하는 개정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 제32289호 (2021.12.31.)	· 국군재정관리단의 기능에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무를 포함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312호 (2021.12.31.)	· 장병의 진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실제 요양에 필요한 기간만큼 병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위하여 하사 이상 군인은 시간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군인의 임신·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난임치료시술휴가의 일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408호 (2022.2.11.)	·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동참모의장이 각군 본부 등 소요 제기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소요제기서에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작전운용성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원칙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무기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등을 해소하고, 방위력개선사업 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사유로 무기체계 등의 소요량 등이 수정되는 경우에는 소요결정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도록 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 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조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459호 (2022.2.22.)	· 성고충 전문상담관을 두는 부대를 군단급 이상 부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는 병력규모와 부대위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부대에도 배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병력이 밀집되어 있는 부대나 격오지(隔奧地)에 위치한 부대에 근무하는 병사들에게도 전문상담관에 의한 조력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2467호 (2022.2.22.)	· 1959년 이전 퇴직군인 급여 지급을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행정·기술직군 정원 1명(7급 1명)으로 조정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518호 (2022.3.8.)	· 비상근 예비군을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비상근 예비군'과 연간 소집 기간이 30일 초과 180일 이내인 '장기 비상근 예비군'으로 구분하고, 그 정원을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5,000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700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며, 국방부장관은 비상근 예비군을 연 1회 선발하되 정원에 미달하여 선발한 경우에는 수시 선발계획을 통하여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상근 예비군의 소집, 정원, 선발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 제32519호 (2022.3.8.)	·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사준칙 등을 정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장병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려는 제정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정 제32520호 (2022.3.8.)	·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의 수사 절차 및 방법, 군 수사기관인 군검사, 군사법경찰관과 민간 수사기관인 검사, 사법경찰관 상호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제정
군검찰단의 조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32530호 (2022.3.11.)	·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및 각 군 검찰단에 두는 조직과 군검사의 정원 등을 정하려는 개정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제32531호 (2022.3.11.)	· 지역별 군사법원에 각각 군사법원장을 두도록 하고, 군사법원장은 군판사인 대령으로, 지역별 군사법원 재판부에 두는 부장(部長)군판사는 대령 또는 중령으로 보(補)하도록 하는 등의 개정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560호 (2022.4.1.)	·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우리 군이 개발·운영하는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의 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보다 향상된 미사일 능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육군미사일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지역적 의미가 강조된 ‘적지중심 작전지역에서의 타격작전’으로 한정된 임무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적의 전략적 중심 등에 대한 타격을 포괄하는 ‘전략적·작전적 표적 타격 임무’로 확대·발전시키려는 개정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일부개정 제32561호 (2022.4.1.)	· 최근 탄도탄(彈道彈)조기경보레이더의 추가 배치 등 첨단 무기체계의 도입으로 보다 향상된 전력을 실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명칭을 그 격상된 역할과 위상에 맞게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로 변경하고, 현재 ‘영공 및 군사 주요시설에 대한 지대공 방어’로 한정된 임무를 ‘전략적·작전적 공중위협 감시와 복합·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으로 확대·발전시키려는 개정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 제32580호 (2022.4.19.)	·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를 재개하며,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 지원 규정을 마련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전부개정
군검찰사무 운영규정	일부개정 제32737호 (2022.6.30.)	· 군검사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를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소속 부대장’에서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의 검찰단장’으로 변경하여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됨에 따라, 군검찰사무에 관하여 부대의 장이 군검사를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규정 등 「군사법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들을 정비하려는 일부개정.
육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38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육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해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39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해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공군본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40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육군참모총장이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공군본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 제32741호 (2022.6.30.)	· 평시(平時)에 군단급 이상의 부대에 설치되어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던 보통 군사법원을 폐지 · 통합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현재 국방부와 각 군 본부에는 고등검찰부를, 보통군사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부대와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에는 보통검찰부를 설치하고 있는 군검찰 조직을 재편하여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해병대사령관이 평시 군사법원 및 평시 군 검찰의 운영에 관하여 군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것에 맞추어,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의 보좌 사무 범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및 평시 군 검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 제32742호 (2022.6.30.)	· 군인 등이 저지른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군인 등이 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등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앞으로는 군인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모두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에 맞추어, 군위탁생 선발의 결격사유에 '군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에 일반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도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743호 (2022.6.30.)	·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군사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검찰부와 보통검찰부로 구성된 검찰단을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 하면서 국방부검찰단장을 장성급(將星級) 장교인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법률 제18465호, 2021. 9. 24. 공포, 2022. 7. 1. 시행)되어 국방부 직할부대의 지휘관 직위 중 '고등군사법원장' 직위가 폐지되고 '국방부 검찰단장' 직위가 신설된 것에 맞추어, 국방부 직할부대 내 육·해·공군 간 순환보직의 대상인 지휘관 직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745호 (2022.6.30.)	· 병역의무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병역준비역이나 예비역 등으로 편입된 사람에게 병역 편입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알아야 할 절차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681호, 2022. 1. 4.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병역 편입 사실 등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의 내용·방식 및 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 등에서 장애 학생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연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필요적으로 그 선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개정.
해군항공사령부령	제정 제32799호 (2022.7.14.)	· 해양안보를 위한 해상항공작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상항공부대를 효율적으로 통제·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해군6항공전단을 확대·개편하여 해군에 해군항공사령부를 설치하고, 해군항공사령부의 임무, 사령관의 직무, 사령부에 두는 부서·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정 제32800호 (2022.7.14.)	·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에서 훈련할 수 있는 부대의 규모가 '대대급'에서 '여단급'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확대된 훈련 규모에 맞는 효율적 지휘·통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 육군의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을 '사단급' 부대로 격상하고,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의 임무, 단장의 직무, 훈련단에 두는 부서·부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2834호 (2022. 8. 2.)	· 전쟁 등 특수상황 발생 시 군(軍)의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군 작전 수행 중에는 군 시설 등 한정된 영역에서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이수한 군인 등이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02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응급처치 관련 교육과정 및 응급처치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 제32835호 (2022. 8. 2.)	·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사관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관생도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 사관생도를 다른 군의 학교나 부대 등 관련 교육기관 외에 국내외 민간대학에도 파견하여 교육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 제32919호 (2022. 9.27.)	· 군(軍) 전투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군 복무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인력을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중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에게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려수당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그 수당의 지급 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928호 (2022.10. 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지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2929호 (2022.10. 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손직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지급권 상실 신고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18호 (2022.12. 6.)	· 군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군보건의료인의 범위에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료인·간호조무사·약사·의료기사·응급구조사의 자격을 갖춘 군인·군무원 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도 포함시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한 군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확대하려는 개정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19호 (2022.12. 6.)	· 국방대학교에서 국방 분야 직무전문교육을 수행하는 직무연수부의 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격을 영관급 장교 또는 교수에서 3급 이상의 군무원 또는 교수로 변경하는 한편, 국방대학교의 국내외 교류협력 및 학교 홍보 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외협력실을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하고, 안전보장대학원·국방관리대학원의 기본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대상에 4급 이상의 군무원을 추가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020호 (2022.12. 6.)	· 인력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기를 정하여 진급시킬 수 있는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에 대해 부대 개편 및 정원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해당 직위 중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관련 5개 직위를 변경하고 공군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장과 방위사업청 국제계약부장 2개 직위를 삭제하는 한편,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 중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의 지휘관 등에 대하여 국방개혁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순환 보직이 가능하도록 임기제 진급 대상 직위의 군 분류를 삭제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제33054호 (2022.12.13.)	·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의 발전과 첨단무인전력체계의 확대 및 획득제도의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 1개 과장급 직위를 군인으로 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제33184호 (2022.12.3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창업기업의 부설 연구기관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병역의무자가 의무복무를 마친 후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적응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의 경우 종전에는 적금의 입금액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의 3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7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개정

부령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8호 (2020.12.30.)	·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복무기관 재지정 여부 결정을 위하여 지방병무청에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39호 (2020.12.30.)	·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에 따라 병역사항 변동신고의무 고지서 등 서식에 대체복무요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42호 (2020.12.30.)	· 종전에 무기체계 등의 소요를 결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장기소요로 결정하던 것을 중기 또는 장기소요로 결정하도록 하고, 긴급소요로 결정할 수 있는 요건에 시범적용 등을 통하여 신기술의 군 활용성이 입증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방위산업체가 조달계약 전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1043호 (2021.02.01.)	· 병역판정 및 입영신체검사 등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질량지수(BMI)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7미만, 33이상에서 BMI 16미만 35이상 등으로 조정하고, 가슴사실균제 등 독성물질에 따른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새로 정하며, 문신의 4급 기준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의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제1044호 (2021.02.02.)	· 방위산업체 등이 방위사업청장에게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나 방위산업물자 등의 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각각의 신청 방법, 방위산업 발전협의회에 두는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47호 (2021.03.30.)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560호, 2021. 3. 30.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4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군소음보상팀을 신설하려는 개정
군인 등의 특수군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48호 (2021.03.31.)	· 위험한 직무나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입실에서 잠수병을 치료하는 의무병 등을 위험군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F-35 항공작전을 위하여 정보체계 운용업무와 사이버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하며, 특수업무수당 중 선박 및 함정 등 군무수당 갑종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출동가산금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제1049호 (2021.03.30.)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절차 등의 세부절차를 규정하는 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0호 (2021.04.16.)	·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에서 군용항공기를 운항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종전의 「항공법」을 인용하고 있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2호 (2021.04.16.)	· 국내외 위탁교육을 받은 군인이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각군 참모총장이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지급경비 반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군위탁생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군위탁생 재정보증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군위탁생의 상급과정 진학을 위한 성적기준을 종전에는 각 과목의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평균 평점을 기준으로 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3호 (2021.05.11.)	· 무기체계를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종전의 종합 군수지원요소 대신 통합체계지원요소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군용총포 등의 운반 허가 신청 시 안전 운반·관리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4호 (2021.05.14.)	· 군 특수 분야 기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방자격의 종목에 국방무인기조종사와 수중무인기조작사를 추가하고, 국방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실기시험의 방법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국방자격의 검정시험을 필기시험도 함께 실시하도록 하며, 국방자격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5호 (2021.06.22.)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7683호, 2021.6. 23. 시행)됨에 따라 조사에 필요한 출석요구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6호 (2021.06.23.)	·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7684호,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체육·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영 등 연기 추천 신청서 및 연기 취소 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8호 (2021.07.16.)	· 군인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를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1881호, 2022.1.1. 시행)됨에 따라 사망보상금 청구서 접수기관을 국군재정관리단 등으로 변경하고, 사망보상금 청구서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59호 (2021.07.23.)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1904호, 2021.7.23.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기획조정실 및 국방개혁실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개방형 직위인 국방홍보원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 법령 속 일부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 제1061호 (2021.07.29.)	· 종전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됨에 따라 입영판정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현행 병역판정 신체검사를 준용하도록 하고, 「병역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요족의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외반슬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내반슬의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등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인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2호 (2021.08.06.)	· 병(兵)의 전투부대 복무를 활성화하고, 성실하게 복무하는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근무성적이 우수한 병의 조기진급 비율을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던 것을 전투부대의 경우에는 10분의 2까지로 확대하고, 해당 계급 전체 진급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도 전투부대는 2명까지, 그 밖의 부대는 1명까지 조기진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3호 (2021.08.06.)	· 전역증(군 경력증명서)의 소장 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행 전역증(군 경력증명서)보다 크기가 작고 사진란을 추가한 전역증(군 경력증명서)의 서식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한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5호 (2021.10.14.)	·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8003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 관련 조문과 서식을 정비하고,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에 관한 통지서 및 교육일 연기신청서 등의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6호 (2021.10.14.)	· 공직자의 배우자도 병역사항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94호, 2021.10.14.시행)됨에 따라, 병역사항 신고서 및 병역사항 공개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67호 (2021.10.14.)	·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하기 위하여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인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관련 서식을 마련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경우 「병역법」에 따라 병무청 홈페이지에 인적사항이 공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
의무·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69호 (2021.11.30.)	· 「병역법」에 따라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편입을 지원하는 사람을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선발대상자로 포함하여 그 선발 절차에 관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는 한편, 병무청장이 선발 대상자 명단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 의무·수의 분야 현역장교 입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통보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
예비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1호 (2021.12.10.)	· 예비군 교육훈련 업무처리자의 예비군 교육훈련 면제 및 연기 관련 비위행위를 명확히 하는 등 예비군 업무 감사 결과 처리를 위한 관계자 문책기준을 정비 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4호 (2021.12.14.)	· 데이터 관련 업무를 수행할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복핵대응정책과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204호, 2021. 12. 14.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5호 (2021.12.28.)	·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국방민원상담센터의 존속기한을 2022년 2월 28일까지에서 2025년 2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하였던 국방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종전의 직급(4급 1명)으로 환원하며,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정원의 직급을 조정하고, 데이터기반행 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업무를 정보체계융합담당관이 전담하도록 하면서 그 명칭을 정보체계데이터담당관으로 변경하며, 국방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76호 (2021.12.30.)	·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할 때 일반적인 노무량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계약목적물 생산에 소요되는 표준작업시간인 기준노무량이 산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 제1077호 (2021.12.30.)	· 지금까지는 계약상대자가 착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180일 이내의 기간 중 지출이 계획된 자금을 한정하여 착수금을 지급하였으나, 노무비, 경비 등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그 기간을 360일로 확대 하고,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조선업체들의 보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착수금 또는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는 보증서 등의 제출 유예에 관한 특례 기한을 2021년 12월 31 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1078호 (2021.12.31.)	· 선발시험 응시자의 편의 증대를 위하여 체력검정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력 인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체검사를 민간 검진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력검정과 신체검사 방법을 개선하며,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요소의 내용과 배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79호 (2022.02.09.)	· 병역증명서, 병역증 재발급, 전역증 재발급 신청서가 통합되어 있는 병역증서 발급(재발급) 신청서를 신청인이 필요한 기재 사항을 구분하여 작성하기 용이 하도록 서식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복학 외 에도 복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별 총연가일수의 범위에서 복무기간에 따른 연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0호 (2022.02.09.)	· 대체역 편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편입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개선하 고, 대체역 편입 신청 시의 첨부서류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신념의 형성 과정은 중학교 및 고등학 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 중 초등학교의 학교생활 세부사항기록부 사본은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6호 (2022.02.15.)	· 심심장애인을 군병원으로 전속시키는 기준이 종전에는 진료기간이 20일 이상 인 경우였으나 앞으로는 진료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1호 (2022.02.22.)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2467호, 2022. 2. 22.시 행)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일부 하부조직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군인권개 선추진단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하는 대신에 정보화기획관을 개방형직위에서 제외하며, 국방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병영문화혁신팀을 폐지 하면서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하부조직 중 사이버대응전력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1 일까지에서 2024년 5월 1일까지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2년 5월 6일까지에서 2024년 5월 6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국방홍보원 관리운 영직군의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의 정원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 으로 전환하려는 개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4호 (2022.02.28.)	·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종전에는 비밀엄수 의무 위반행위로 보아 징계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한 징계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해당 부당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 제1087호 (2022.7.12.)	· 군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심 군사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을 국방부장 관 소속으로 설치하며,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여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 하게 하고, 수사의 공정성 및 군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검찰단을 설치하며,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을 구체적 사건의 범죄수사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사법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88호 (2022.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처분, 복무기록, 상훈 등 전체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병적기록표'에 대한 발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32745호, 2022. 6. 30. 공포, 7. 5. 시행)됨에 따라 병적기록표 발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 이를 모바일 병역증 또는 모바일 전역증으로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이 그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첨부 서류 중 '벤처기업확인서'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장애정도를 판정하는 내용과 관련한 장애인복지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병역판정검사가 필요한 장애인의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0호 (2022.7.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발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정보기획관을 지능정보화정책관으로 변경하면서 그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고도화되는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역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국방정책실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국방부에 총액 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사이버대응전력팀과 안전정책팀을 폐지하면서 국방디지털혁신과 군수정보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5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소프트웨어융합팀과 군수지능화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1호 (202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전문인력 직위'를 영관급 장교 및 위관급 장교의 정원 직위로 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준사관 및 부사관은 전문인력 직위에 보직될 기회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준사관 및 부사관의 정원 직위 중에서도 전문인력 직위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 군수 등 기술·기능 전문 분야 등에 속하는 직위에 준사관이나 부사관도 보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092호 (2022.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특수 장비 조작·운영 요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특수기술자에 대한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에 공군 전략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신설하여 그 월지급액을 정하는 한편, 잠수함 승조원에 대하여 1년만 지급하던 특수업무수당을 3년을 초과하여 복무하는 잠수함 승조원에게 계속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잠수함 승조원의 실제 승조기간에 맞추어 차등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 제1093호 (2022.8.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는 개산계약(概算契約)의 형식으로 장기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이행기간 중 설계변동 등에 따라 예산소요가 증감하여 개산계약금액으로는 원활한 계약이행이 어렵게 되더라도 실제발생원가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원가의 증감분이 기존 개산계약금액 대비 100분의 5 미만인 때에는 개산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능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설계변동과 계약내용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제발생원가 증감분의 규모와 관계없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우에도 원가 증감분이 기본 대비 100분의 3 이상이면 개산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 제1094호 (2022.8.9.)	· 예비군부대 지휘관 등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중 장교 또는 부사관의 경우 장기복무 여부 및 의무복무기간 만료 여부와 관계없이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하기만 하면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선발시험 응시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전역 장교·부사관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일원화하고, 현역복무실적 평가의 근무 평정 점수 반영 기준을 절대평가 점수에서 종합판정 점수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6호 (2022.9.13.)	·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의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과 관련하여 가중처분이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7호 (2022.10.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퇴역유족연금 등의 퇴직유족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및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등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098호 (2022.10.4.)	·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상이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녀 또는 손자녀의 재해유족급여의 등분 청구 및 상이유족연금 등의 청구 등의 연령 기준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개정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복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100호 (2022.11.18.)	· 군 형사사건기록 중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과 「군사법원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에 따라 산정한 수수료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군사법원법」의 개정 내용에 맞춰 '검찰관'의 명칭을 '군검사'로 변경하고, 군 형사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사무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는 변호인의 범위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101호 (2022.12.5.)	· 4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을 할 때에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군무원에 대한 평정점을 가산할 수 있는 범위를 2.5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확대함으로써 해당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인력을 확보하고 해당 군무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려는 개정

법령명	공포호수(일자)	주요내용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102호 (2022.1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에 국방우주정책 및 전자기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국방인공지능의 발전과 첨단무인전력체계의 확대 및 획득제도의 개선 등 국방첨단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3명)을 증원하며, 군무원 채용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 중 2명(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국방부 1개 과장급 직위를 군인으로 보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1명(4급 1명)을 감축하며,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국방정책실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과 국방정책실장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서울현충원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3054호, 2022. 12. 13.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의 개정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제1104호 (2022.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접노무비를 계산할 때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 산정한 기준노무량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노무량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방산노임단가를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단위당 가격에서 업체별 노임단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국회 국방위원회 구성 및 주요 활동

위원장(국민의힘)



한기호(52년생,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
3선(18·19·21대) 육사 31기
(현)국민의힘국가안보위원장, 본관 421호
784-1364
(현)한국-호주 의원친선협회 회장 6788-5291
(현)한국청소년연맹명예총재, (전)국민의힘 사무총장, F6788-5295
(전)육군사단장·5군단장·교육사령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62년생, 비례대표)
초선
경기도 외교안보학 박사, 전남대학교 경영학 석사,
육사 40기
(전)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안보대변인, (전)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회관447호
O)784-4177
6788-6181
F)6788-6185



김영배(67년생, 서울 성북구갑)
초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 박사 수료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문재인정부 청와대
정책조정·민정비서관, (전)민선5·6기 성북구정장
회관 627호
O)784-1521
6788-6241
F)6788-6245



설훈(53년생, 경기 부천시을)
6선(15·16·19·20·21대)
고려대 사학과 학사
(전)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장, (전)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위원장, (전)김대중 총재 보좌관
회관948호
O)784-8570
6788-6616
F)6788-6620



송갑석(66년생, 광주 서구갑)
재선(20·21대)
전남대학교 무역학 학사
(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 (전)더
불어민주당 중앙당 대변인, (전)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간사
회관1020호
O)784-5750
6788-6636
F)6788-6640



송옥주(65년생, 경기 화성시갑)
재선(20·21대)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 학사, 행정대학원 졸업
(전)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
(전)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장, (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상임부위원장
회관319호
O)784-9470
6788-6661
F)6788-6665



한규백(61년생, 서울 동대문구갑)
4선(18·19·20·21대)
성균관대 및 (후) 무역대학원 수료
(전)노무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 (전)민주당 조직
위원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 (전)더불어민주
당 전략홍보본부장·사무총장·최고위원·서울시당위원
장, (전)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회관807호
O)784-4181
6788-6701
F)6788-6705



윤우덕(57년생, 경기 파주시갑)
3선(19·20·21대)
연세대학교 사회학 학사·경제학 석사
(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전)국회 예산결
산특별위원회의 간사, (전)국회 국방위원회의 간사
회관943호
O)784-5041
6788-6901
F)6788-6905



이재명(64년생, 인천 계양구을)
초선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전)제35대 경기도 도지사,
(전)제19·20대 성남 시장
회관818호
O)784-8957
6788-6656
F)6788-6660



정성호(61년생, 경기 양주시)
4선(17·19·20·21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제28회 사법고시, (전)제21대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
원의 위원장, (전)제20대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의위원
장, (전)제19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전)제19대 국회 교안개선 및 병영혁신특위 간사
회관646호
O)784-8991
6788-7201
F)6788-7205

국민의힘



신원식(58년생, 비례대표)
초선
육사 37기·국민대 경영학 박사
(전)제3보병사단장, (전)국방부 정책기획관, (전)수
도방위사령관, (전)합참 작전본부장, (전)국민의힘
제4정책조정위원회의(외교안보) 본관 745호
O)784-9630
6788-6681
F)6788-6685



김기현(59년생, 울산 남구을)
4선(17·18·19·21대)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법학 석사
(전)국민의힘 원내대표, (전)울산광역시시장, (전)대구
지법·부산법원 울산지원 판사
회관560호
O)784-3874
6788-6126
F)6788-6130



성일총(63년생, 충남 서산시태안군)
재선(20·21대)
고려대 경영학과·광운대 환경공학 박사
(현)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제21대 전반기 국방
위원회의 간사, (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회관423호
O)784-6291
6788-6621
F)6788-6625



이현승(63년생, 부산 부산진구을)
3선(19·20·21대)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전)국회 국방위원회의 위원장, (전)국회 국토위원회
위원장, (전)자유한국당 당대표 비서실장,
(전)새누리당 부산시장 위원장
회관425호
O)784-7911
6788-7106
F)6788-7110



임병현(53년생, 대구 중구남구)
초선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영남대학교 행정학 석사(전)
제23회 행정고시, (전)대구광역시 기획관리실
장, (전)대구광역시 남구청 남구청장(3선)
회관1014호
O)784-8450
6788-6066
F)6788-6070

비교섭(1)



배진교(68년생, 비례대표)
초선
인천대학교 대학원행정학과 석사과정 수료
(현)정의당 민생특위 위원장, (전)정의당 원내대표,
(전)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회관517호
O)784-3080
6788-6551
F)6788-6555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 활동(2021. 1. ~ 2022. 12.)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21대 전반기 국회		
제384회 임시회 (2021.2.1.~2.28.)	2021.2.17.	·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상정
	2021.2.23.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제385회 임시회 (2021.3.2.~3.31.)	2021.3.16.	· 「사관학교 설치법」 등 법률안 의결
제386회 임시회 (2021.4.1.~4.30.)	2021.4.28.	·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업무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7회 임시회 (2021.5.3.~6.1.)	2021.5.31.	· 현안보고(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88회 임시회 (2021.6.4.~7.3.)	2021.6.9.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89회 임시회 (2021.7.5.~7.31.)	2021.7.26.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90회 임시회 (2021.8.17.~8.31.)	2021.8.20.	·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방위사업법」 등 법률안 상정
	2021.9.8.	· 2020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1.9.15.	· 2021년도 국정 감사계획서 채택 · 「예비군법」 등 법률안 의결
	2021.10.5.~10.21.	· 2021년도 국정감사 실시
제391회 정기회 (2021.9.1.~12.9.)	2021.11.9.	· 2022년도 예산안 상정
	2021.11.16.	· 2022년도 예산안 의결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상정
	2021.12.1.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제392회 임시회 (2021.12.13.~2022.1.1.)	2022.1.5.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군인재해보상법」 등 법률안 의결 ·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제393회 임시회 (2022.1.27.~2.25.)	2022.2.28.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제394회 임시회 (2022.3.7.~4.5.)	2022.3.22.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3.29.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회기	회의일자	주요내용	
제397회 임시회 (2022.5.3.~6.1.)	2022.5.17.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제21대 후반기 국회			
제398회 임시회 (2022.7.4.~8.2.)	2022.8.1.	· 업무보고(국방부·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방위사업청 소관)	
제399회 임시회 (2022.8.16.~8.31.)	2022.8.29.	· 2021회계연도 결산안 상정 · 2020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 「군인사법」 등 법률안 상정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상정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8.31	· 2021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2022.9.19.	· 2021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 · 「방위사업기술보호법」 등 법률안 상정 ·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의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 상정	
	2022.10.4. ~10.24.	· 2022년도 국정감사 실시	
제400회 정기회 (2022.9.1.~12.9.)	2022.10.31.	· 2023년도 예산안 상정	
	2022.11.4.	· 2023년도 예산안 의결 · 「군무원인사법」 등 법률안 의결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등 법률안 상정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상정 ·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2022.11.18.	·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UAE군 지원 파견연장 동의안」 의결 · 「군인연금법」 등 법률안 의결
제401회 임시회 (2022.12.10. ~2023.1.8.)	2022.12.28.	· 현안보고(국방부 소관) · 「광주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안 상정	

동영상



국군 홍보영상
p047



육군 홍보영상
p047



해군 홍보영상
p048



해병대
홍보영상
p048



공군 홍보영상
p049



태풍 한남노 피해
지원
p072



육군 KCTC 여단급
쌍방훈련
p087



해군
원태평양훈련(RIMPAC)
p089



한미 공군 이동식발사대
타격훈련 및 연합
공격편대군 비행
p089



군 장병 AI-SW
역량강화 사업
p119



고체추진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p127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송달 시행
p137



DX KOREA 2022
p146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p152



한미 해군, 동해
연합 해상훈련
p163



美 전략폭격기(B-1B)
한반도 재진개,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
p163



2022년
서울안보대화(SDD)
p189



바다의 날 청해부대
UDT 해상훈련
p202



2022 국군 화보
프로젝트 '강한 국군'
p225



공익광고
'70년의 기다림'
p226



청년Dream
국군드림 앱,
고속버스 모바일
서비스
p228



병역명문가
선양사업
p232



백마고지
유해발굴
p275



KF-21 보라매 첫
초음속 비행 성공
p327

색인

ㄱ		담대한 구상	24, 40, 99, 100, 102, 157, 192
고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60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훈련	195
과학회경계시스템	53	대량응징보복	59, 62, 63, 110, 132, 257, 260
국군외상센터	216, 218	대륙간탄도미사일	15, 16, 31, 165
국군포로	103, 104, 105	대체복무제도	233, 297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71	대한민국방위산업전	148
국방AI센터	111, 117, 118, 261	동명부대	198, 199, 200, 211, 311, 312, 313
국방과학연구소	70, 129, 145	드론 택배	11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76, 277	드론봇 전투체계	50
국방우주발전위원회	124		
국방인권모니터단	292	ㄴ	
국방정신전력원	89, 97	론샷 프로젝트	142
국방헬프콜센터	287, 288		
군 공항 이전	242, 243	ㄷ	
군 직무표준화	251, 252, 253	마일즈	84, 257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238	무인수상정	135
군비통제검증단	378	무인잠수정	19, 130, 135
군인권개선추진단	292, 293	무인항공기	19, 51, 53, 60, 132, 134, 135, 210, 260
군인권보호관	293	미래도전국방기술	129, 141, 142
군인권지킴이시스템	292	민군상생 복합타운	244, 245
군인연금제도	275, 276	메디온	218
군인재해보상법	280		
국제평화지원단	208, 210, 317	ㄴ	
가상현실	119, 138, 144	방위력개선티비	133, 134, 174, 256, 257, 259, 260
국제평화활동센터	207, 208, 209, 210	방위비분담금	158, 159, 160
국방안전훈련	220, 221	방위비분담특별협정	158, 159
국민소통전문가단	227	병역명문가	234
국방정보공개 국민참여단	228	북방한계선	54, 90
국민정책디자인단	228	비무장지대	100, 228, 277
군사시설 보호구역	230, 241, 242	비질런트 스톰	166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251, 281		
국가직무능력표준	252	ㄴ	
		서울안보대화	11, 68, 103, 128, 185, 190, 191, 192
ㄴ		순항훈련	87, 90, 91
남북공동연락사무소	24	스마트 인재관리체계	223, 236, 237
남북공동유해발굴	100		
		ㄷ	
다련장	49, 52, 134, 135, 260		

스마트팩토리	56
스톡홀름 합의	25
신뢰성기반비용관리	226
신속시범획득사업	109, 146
상륙돌격장갑차	135
성실수행 인정제도	141, 142
상호군수지원협정	197
상태기반정비	56, 223, 224
상생발전협의회	245
선택형 급식체계	266

○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191
	10, 11, 13, 68, 76, 176, 177
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	179, 180, 181, 191, 193, 208, 209
아크부대	185, 205, 206, 211, 311, 312, 318, 319
아태경제협력체	10
아프리카대지열병	71, 75, 76
연합지휘소훈련	56, 94, 168, 169
오쉬노부대	202, 211, 311, 312, 315, 316
우주안보워킹그룹	128, 192
원격정비지원체계	56
유엔 남수단임무단	200, 20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190, 206, 210, 311, 319
유휴·방치시설	244
인플루엔자	76, 220

ㄱ

자산형성프로그램	271, 27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5, 32, 32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71, 74
전쟁기념관	97
지휘소연습	93, 168, 171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51, 53, 60, 132, 134, 260
자기개발비용지원 제도	248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228

大

창업경진대회	249
천무	149, 174, 325, 326
청령국방 민관협의회	229
청해부대	186, 190, 202, 203, 204, 211, 311, 312, 315, 317, 318
청령옴부즈만 제도	229
창업지원 프로젝트	248, 249

ㄱ

킬체인	59, 61, 132, 174, 257, 260
코브라훈련	90, 93
칸퀘스트훈련	93
카만닥훈련	93, 180

ㅌ

단약 비군사화	246, 247
태평양역제구상	15
통합방위협의회	80, 81

표

플루토늄	30
팔레스타인 정전감시단	30

ㅎ

한국형 3축체계	24, 39, 43, 59, 110, 112, 130, 131, 132, 135, 257, 259, 260
한국형미사일방어	51, 59, 61, 132, 135, 257, 260
	56, 127, 154, 156, 160, 162
한미안보협의회의	163, 166, 167, 172, 174, 175, 196
한미확장역제전략협의체	163
한빛부대	198, 200, 201, 207, 211, 311, 312, 314, 319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176
해외간급구호대	77
화이트햇 콘테스트	66
한태평양훈련	90, 93, 306
한남노	74, 76
한미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	72

한미상호방위조약	52, 162, 303, 304
화랑훈련	70, 82, 93, 94
화학무기금지기구	71, 72, 73, 103
해외파병 상비부대	210, 211, 311

A

ADEX	148, 160, 180, 184, 189, 227
ADMM-Plus	10, 13, 68, 76, 179, 180, 181 191, 192, 193, 208, 209
APS	52
AR	86, 119, 120
ARF	11, 191, 193
ASF	71, 75, 76
APEC	10
AOIP	13
AI	44, 53, 60, 75, 86, 96, 97, 110 11, 112, 113, 114, 117, 120, 131, 144, 223, 237, 261
AUKUS	20

B

BRICS	18
BWC	194
BCTP	90

C

CCPT	56, 94, 168, 169
CCWG	67, 156
CIS	18
CPX	93, 168
CSTO	9, 18
CWC	73, 103, 194
CWMDC	72
CYBERNET	69
CBM+	56, 224

D

DSC	163, 164, 165, 167
DX-Korea	148

E

EDSCG	163
e-MU	248
e-Nav	83
EU	9, 13

F

FA-50	148, 149, 325, 326
FDO	52
FOC	169, 173, 175

G

GSOMIA	176
GFP	15
GOP	53, 117, 118, 131, 272

H

HEU	30
HGV	16
HUAV	60

I

ICBM	15, 18, 22, 23, 25, 30, 31, 32 100, 165
IOC	173, 175
IoT	56, 67
IRBM	32, 157, 166

J

JCPOA	9
-------	---

K

KAHV	74, 133
KADIZ	178
KAMD	59, 61, 131, 174, 257, 260
KASI	155, 179
KCTC	89, 90, 94
KDRT	77, 205

KF-21	133, 179, 260, 327, 328
KIDD	156, 163, 167
KMPR	59, 62, 63, 132, 257, 260

L

L-SAM	62, 134
-------	---------

M

MADEX	148
MDL	350, 352, 354
MUAV	60

N

NASA	129
NATO	9, 10, 14, 69, 72, 103, 165, 187 188
NDS	8, 14
NLL	24, 32, 41, 54, 90, 100
NPR	164
NPT	103, 194, 307
NSS	8, 14

O

OPCW	71, 72, 103
------	-------------

P

PBL	57, 226
PDI	15
PKO	181, 184, 185, 206, 207, 208 209, 210, 312, 314, 319

R

RAA	20
RHCC	11
RAM-C	57, 226
RIMPAC	90, 91, 93, 306

S

SCM	56, 127, 154, 156, 162, 164 165, 167, 172, 173, 174, 175
-----	-------------------------------------------------------------

SCO	8, 9, 18
-----	----------

SDD	11, 68, 103, 190, 191
-----	-----------------------

SLBM	15, 29, 32, 157, 260, 329
------	---------------------------

SMA	93, 158
-----	---------

SOFA	20, 158, 243, 304, 322
------	------------------------

SPD	56
-----	----

SPG	56
-----	----

SSA	19, 126
-----	---------

SAREX	91
-------	----

T

TPFDD	52
-------	----

U

UAV	19, 273
-----	---------

UNOCT	70
-------	----

USF	56, 94, 168, 169, 170, 175
-----	----------------------------

USV	19
-----	----

UUV	19
-----	----

V

VR	86, 97, 119, 120, 138, 257
----	----------------------------

W

WMD	26, 38, 39, 43, 62, 63, 103, 130 132, 135, 163, 165, 195
-----	-------------------------------------------------------------

Y

YRP	308, 321
-----	----------

2022 국방백서

Defense White Paper

발행일	2022년 12월
발행	대한민국 국방부
편찬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
편집디자인	(주)다니기획

본 책자의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방부 국방전략과(02-748-6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